

제329회국회  
(정기회)

#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11월7일(금)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 가. 헌법재판소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5.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 1
  - 가. 헌법재판소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4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류지영·이만우·김태원·안홍준·강은희·김현숙·윤영석·윤명희·최봉홍 의원 발의)(계속) ..... 24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25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25
5.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6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 32
  - 가. 헌법재판소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률안 상정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된 3개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법률안을 의결하고 정회했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에 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정이 상황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 가. 헌법재판소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10시12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난번 4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요 검토 내용 중심으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판활동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홍보사업 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기존의 블로그 운영 실적과 효과는 분석하지 않고 동일·유사한 콘텐츠인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홍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며, 헌법 바로 알기 공모전의 상금이 다른 여타 기관의 상금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헌법재판 지역상담실 운영경비를 본부기본경비와 재판활동 운영지원 사업에 각각 편성하고 있는데 지역상담실 운영경비의 전체 규모 및 집행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성 경비 측면에서 재판활동 운영지원 사업에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본부기본경비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차량·선박비 예산은 집행 실적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고, 참고인 및 증인에 대한 여비는 배상금 목이 아닌 보상금 목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연임 헌법연구원 해외연수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2013년에 신설된 연임 헌법연구원 연수는 10년 임기 만료 후 연임된 헌법연구관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인데 연수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연수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선대리인 보수 등 사업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 중 여성 국선대리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저조한데 양성평등 제고라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 대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 참고인 비용을 단순히 집행률만 고려하여 삭감하는 것보다는 구두변론 활

성화라는 성과목표에 부합되도록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 전문학술지 발간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헌법재판 전문학술지는 논문, 평석, 국제학술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등을 게재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헌법논총 발간사업과 상당 부분 겹치고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의 대학이나 헌법 관련 학회 등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는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은 전례와 같이, 홍일표 간사님, 7분씩 할까요?

일단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예산안과 관련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주질의, 보충질의 등등 전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노철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래 위원 경기 광주시 새누리당 노철래 위원입니다.

예산 이렇게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네. 그런데 한 두서너 가지만 한번 지적을 해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2015년 블로그 운영 사업비는 5000만 원, 소셜미디어 활용 대국민 소통 사업비는 9800만 원 등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4억 87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런데 홍보사업 예산이 2012년에 2억 2300만 원, 2013년에는 3억 5000만 원, 2014년 3억 6000만 원, 매년 이렇게 증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34.9%나 증액하는 4억 8700만 원을,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 계상을 했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다른 부처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에 주력해 왔는데 저희 재판소는 2012년 11월에 비로소 블로그를 개설 운영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SNS 쪽의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쪽 거를 떼어 와서 겨우 먼

피만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책정해서 쌍방향 소통, SNS 이거를 제대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다소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노철래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캠페인 광고비, 헌법재판소 블로그 운영, 포털사이트 제휴 캠페인, 지금 말씀하신 페이스북 등 SNS 이벤트, 유튜브 게재 영상 제작, 대략 보면 비슷비슷한 그런 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면 이런 광고성, 이런 홍보성에 대해서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라는 게 편성 지침인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배치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게 그동안 해 왔던 거는 콘텐츠를 올려 놓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던 거고 지금 SNS로 하는 것은 쌍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더욱이 오프라인에서 보는 것과 온라인으로 하는 것과는 사용자들도 아시다시피 층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런데 한 예를 보니까 현재 블로그에 게시된 432건의 글 중에서 댓글 등 반응이 전혀 없는 글이 149건이나 돼요. 34.5%에 달하고 있거든요.

댓글 작성된 글도 보면 대부분 현재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는, 말하자면 블로그 기자들, 이렇게 블로그 운영에 따른 효과를 찾기가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썩 와 닿지가 않아요. 이런 점은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나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2013년도에 167명이 하루에 방문하던 게 금년 들어서는 그래도 2배 가까운 3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더욱더 내용을 내실 있게 해 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홍보성 예산은 통폐합하는 게 저는 일단 흐름에 맞다고 봐요,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죽 나열하시지 말고. 그거를 한번 신중히 검토,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차량·선박비 예산 집행 실적이 조금 과다한 것 같다 싶어서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량·선박비 중에 유류대 및 정비 유지비 등 이런 데 사용 경비로 2015년 예산에 전년 대비 10.8%, 1300만 원 삭감된 1억 7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 대부분 내년 예산안 보면 평균치 한 4~5% 정도, 3~4%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10.8%나 삭감이 된 특별한 이유 있어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차량·선박비가 대부분 유류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철래 위원** 차량이 많이 늘어났나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도 전에 2011년, 2012년 이때에는 주유권 카드로, 그거로 하다가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후불제 정부구매 방식으로 해서 지정 주유소를 정해 가지고 하나씩 예산 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적었지만 최근의 석 달 평균을 보면 8537원, 그러니까 853만 7000원씩 이렇게 든 거라서 최근 석 달에는 또 이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년에 짤 겁니다. 그래서 더 삭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철래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만큼 카드 사용함으로써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10.8%나 줄어드니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최근 석 달은 또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짤 겁니다.

**○노철래 위원** 그래요, 그거를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연임 헌법연구원 해외연수 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연수 기간 평균 7일, 해당 국가의 법원 및 법과대학 방문, 문화 사찰, 연수비용 1인당 1000만 원,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한 2페이지 정도에 그치고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일정표만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효율성 면에서 꼭 필요합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문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기근속에 대한 유인을 부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철래 위원**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그래서 현재 해외에 나가는 사람은 대부분 임명돼 가지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나가고 10년이 됐거나 10여년 된 사람들은 업무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나가서 해외에서의 헌법 재판 동향도 한번 보고 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거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부여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 말씀하신 그 보고서 쓰는 게 부실한 거는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현재는 다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내규도 새로 만들고 내실 있게 하도록 아주 체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노철래 위원** 어차피 10년 이상 됐다 하더라도 전문능력 강화라고 하는 또 연구 기회 제공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좀 더 내실 있게, 지금 말씀대로 결과보고서도 바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너무 그렇게 형식적으로, 진짜 누가 봐도 아, 이거는 그냥 공로연수 며칠 가서 놀다 오라고 있구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지난번에는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노철래 위원** 이런 인상이 안 들게끔 제대로 해서, 아, 그래도 헌법재판소 10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해외 현재 운영 사례라든지 거기에서 연구 결과물이 나오는 게 어떤 게 있고 우리하고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라도 뭐가 좀 확보돼 가지고 해야 제대로 된 연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거를 좀 적이 한번 검토해서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해서 의식을 완전히 환기시켜 봤습니다.

○**노철래 위원**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기호 위원님!

○**서기호 위원**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청소용역 노동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무처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이번 예산안은 국정감사 전에 편성된 거라서 이번에 증액 의결이 이루어지면 수정계약 의뢰를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서기호 위원** 시중노임단가에 맞추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2700만 원 정도 증액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1억 2007만 원이지만 그게 그거니까요.

○**서기호 위원** 전체 액수 1억 2000여만 원 정도면 이게 큰 액수도 아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수정 증액이 돼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명실공히 헌법을 수호하는 기본권의 보루로서 그런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을 해서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시다마는 20쪽의 국선대리인과 관련해 가지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여성 국선변호인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 2014년의 경우에는 3.1%밖에 안 되고 2013년은 0.8%인데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국선대리인이 하는 목표가 수혜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와주고 또 양질의 국선대리인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그런 의지 또 소명의식이 투철한 분들로 하다 보니까 남녀 구분에 신경을 좀 덜 썼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호 위원**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필요하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방금 말씀 올렸듯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정자의 여성 비율을 대폭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위원**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것은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지만 2006년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양성평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거니까 이 법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서기호 위원** 그다음에 구두변론 활성화와 관

런해 가지고 23쪽에도 나오니다마는 참고인의 연구비 및 진술료 비용으로 전년 대비 66.7%가 삭감된 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삭감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통합진보당 사건 변론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건들 변론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률이 낮아져서 내년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삭감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기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집행률만 고려해서 책정할 것이 아니라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선대리인 보수하고 구두변론 활성화와 관련된 참고인 비용은 의무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집행률만 고려해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과 달리 좀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이 주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얼마 집행이 안 됐을 텐데 올해 집행된 것만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고 구두변론 활성화라는 그 성과목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재부하고 절충 과정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기호 위원** 참고로 구두변론을 성과목표에 따라서 매월 1회, 총 12회 개최하게 되면 참고인이 24명이 되는데, 2009년도의 경우에 24명의 참고인이 진술했었고 1400만 원이 실제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성과목표에 맞지 않은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선대리인 보수하고 구두변론 활성화와 관련된 참고인 예산, 이것은 두 가지가 성격이 비슷하게 집행률에 따른 예산편성이 아니라 성과목표에 따른 의무지출로 가야 된다.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서기호 위원** 그리고 국선대리인 선임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각 사유가 불분명하게 되어 가지고 계속 기각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그 뒤에 그 대안으로서 결정문상에 그리고 규칙상에 기각 사유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할 수 있는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개선……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요, 결정문에 표시해 주는 것이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위원** 그리고 국선대리인 보수 예산에 대해서도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이 부분도 2014년 9월 예산집행률이 36% 낮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하신 것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렇게 감액된 겁니다, 우리가 감액하려고 했다기보다요.

○**서기호 위원** 아, 감액이 됐다? 기재부에서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서기호 위원** 기재부와 협의할 때 국선대리인과 구두변론 활성화와 관련된 참고인 예산은 집행률만 가지고 감액하시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호 위원** 성과목표에 따라서 이것은 활성화되어야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현재로서는 정 안 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예비비 가지고 충당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한성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 김용현 사무처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지요.

얼마 전에 국정감사 갔을 때는 정말 눈치도 못봤는데 큰일 하나 하셨더라고요,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결정.

지방 출장도 많이 다니는데 대도시 중심으로 다니고 농촌지역은 안 돌아봤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이동하기 편하라고 도로 건설을 한다, 교량 건설을 한다, 철도 건설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워낙 살 길이 없어 가지고 도시로 다 빠져 나가서 인구가 줄어서 또 통행량이 주니까 시설을 하려면

통행량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중에 농촌지역이 또 이렇게 인구 준다 고 도시하고 균형이 너무 안 맞다면서 이렇게 갑자기 불과 한 19년 만에 4 대 1에서 3 대 1이 됐다 가 2 대 1로 됐다가 급속하게 이렇게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외국의 양원제 문제하고 대단히 맞지 않다……

이 판결 결정할 때 변론을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작년 9월 달엔가 변론을 했습니다.

○이한성 위원 변론을 하기는 했는데, 현재로 유지해도 괜찮다는 입장도 많이 들었습니까? 변론은 주로 비율이 너무 높다, 낮춰야 한다, 이런 쪽으로만 변론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원고 쪽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청구인 측이니까 뭐……

○이한성 위원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이한성 위원 그래서 일방적으로 다소 균형이 안 잡힌 주로 비율을 낮춰야 된다는 쪽의 변론을 듣고, 현재는 이렇게 성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 반대 측 변론도 듣고 그렇게 할 여유도 있을 테고……

지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 이것은 이렇게 요란하게 변론도 1년 내도록 몇 번이나 하고 기록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거구 획정의 문제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차대한 이해관계가 걸리고 헌법적인 문제가 걸리는 마당에 이것을 그냥 주로 인구과밀지역의 국회의원 수 늘려 달라는 사람들의 요구, 그러니까 비율이 현재 3 대 1이면 너무 심하다, 2 대 1로 낮춰야 된다,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한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을 주로 귀담아듣고 다른 사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처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충청북도 영동입니다.

○이한성 위원 영동이요? 영동도 옛날 한때 한 20만 명 잘 살았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다 빠져나가서 보은·영동·옥천이 한 선거구가 되어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이한성 위원 지금 다시 무너져서 또 합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사실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이나 간에 그 대표성이 단순 숫자상으로 그렇긴 하지만 자기 지역의 기초의원이 누구인지 광역의원이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시골지역에서는 워낙 이게 정치하고 같이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고향을 떠난 출향인들,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출향인들이 자기 고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돌아가는 편인데 이것을 그냥 현지에 남아 있는 인구만 가지고 단순 평면적으로, 기습적으로……

변론도 아마 균형 있는 변론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율이 너무 높다 하는 쪽의 그런 청구인들 입장이 주로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론의 입장도 듣고 균형 잡힌 변론을 실시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고 시간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처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작년에 변론에서는 쌍방에서 추천한 참고인 진술을 양쪽을 똑같이 공평하게 들었습니다.

○이한성 위원 참고인 누가 왔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왔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국회의원이 아니고 학자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학자들 뭐…… 물론 학자들도 중요하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양쪽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렇지만 학자들이 대변하더라도 현실 정치 또 현재 주민들, 이렇게 끌고루……

헌법재판소가 그냥 학자들 내지 법률가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결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물론 헌법적인 법 해석을 하지만 정치적인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두 가지가 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위원 그렇지요, 두 가지가 겹하는 겁

니다. 단순히 그냥 순수하게 사법적 해석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변론을 거친 데 대해서 학자들 얘기만 듣고 현실 국회의원들 얘기라든지 아니면 지방 주민들의 얘기라든지, 애타는 그런 주민들의 얘기……

지금 이렇게 FTA 하면서 농촌지역의 표가 너무 없어져 가지고 앞으로 소수의견을 반영할 길이 점점 줄어듭니다. 산업화된 지역의 이익만 대변하고 앞으로 농촌지역이라든지 또 특히 어르신들이 시골지역에 많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또 지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소수, 약자, 지방, 이런 것을 대표할 비중이, 부분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아마 앞으로 헌법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런 우려를 했더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양쪽 변론을 충분히 듣고 했어야 옳지 않느냐……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음선필 교수께서 와서 참고인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이나 이것을 통해서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까하는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면 양쪽에 대한 고민을 다 했고 다만……

○이한성 위원 그래도 변론 절차를 보면 생생한 그런 것보다……

학자들 이야기도 물론 깊이 연구하셨다고 봅니다. 학자를 무시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현실 정치가 있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이 있고 넓게 보면 대한민국이 농촌지역하고 도시 산업화하고 차이가 계속 악순환,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선불리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예고를 하든지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인구가 이렇게 모자란다는 것을 갖다 대비라도 하게 만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습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헌법재판소가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그런 대한민국 현실을……

미국 같은 데 보면 상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천만 명, 6000만 명 이상 사는 부자 주하고 또 수백만 명, 간신히 주 형성하는 사막지대, 산간지대, 산악지대 이런 주도 상원은 같은 2명입니다.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단순히 단원제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개 지역, 4개 지역 이렇게 단체가 다 의원 수 하나만 가진다면 앞으로 대단히 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만 그 결정문의 취지가 나와 있는 대로 하여간 지역 대표성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투표가치의 등가성이라는 것을 희생시킬 정도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한성 위원 거기에 너무 매몰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민 다음에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이춘석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 도서관이 공법 전문 도서관으로서 규모 면에서 전국 국내에서 가장 크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왜 그러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보다는 관심이 공법 쪽이라서 일반도서관에 있을 만한 서적들은 없고 어떻게 보면 딱딱한 헌법, 행정법 이쪽으로만 있으니까 관심이 적다 이런 취지입니다.

학자들이 주로 옵니다.

○이춘석 위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수들, 변호사들, 학자들이 주로 오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리고 장서가 원체 많으니까 지금 그 헌법재판소 본관에 놓으면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던데, 그래서 그것을 다 지하로 옮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무게가 나갈 만한 것은 지하실 창고를 비우고 거기에다 옮기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2년간은 그래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이 대충……

○이춘석 위원 2004년도도 토지매입비 12억 원이 반영됐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매입을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 옆에 있는 쪽

에 북쪽으로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해 관계가 반대가 되어 가지고 반대를 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춘석 위원 외부로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는 비용들이 어느 정도나 들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저쪽에 있는 헌법 재판연구원 그것은 약간 논의라고 할 수 있지만 1년에 한 15억 되고, 나머지 사무실이 나가 있는 것이 몇 억씩 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도서관에 대한 증축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데 향후 증축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시설들을 옮기거나 밖에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임차비가 더 증액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이런 임차비용도 줄이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넓히고 그러기 위해서 도서관을 지으면서 증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적인 시설을 옮겨 나가는 것을 생각 하니까 우선 내년에는 설계비로 7억이 있으면 좋 겠고……

○이춘석 위원 전체적으로는 얼마 정도……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전체적으로는 한 18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전체적으로는 180억 드는데 내년에 7억 정도가 설계비로 반영됐으면 좋겠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것 외에, 7억 외에……

○이춘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구체 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이한성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선거 구에 대한 불합치결정이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이춘석 위원 하여튼 이번 판결의 내용을 보면 물론 지역대표성도 있지만 인구에 가치를 더 중요시한 판결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이춘석 위원 그러면 지역대표성은 전혀 고려 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하고 달라졌고 또 요새는 지방자치가 많이 발

전되어 가지고 전보다는 지역대표성이 희석됐고 이리다 보니까 표의 등가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한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대표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 하고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소선거구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 대 1 기준을 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이춘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심지역,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선거구나 중·대선거구를 설치하고 또 인구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소선거구를 채택한다고 하면 선거구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중선거구제하고 소선거구제가 다르다면 이 경우에도 인구가 절대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비교할 때의 수치가 그대로 2 대 1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렇게 선거구제를 달리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선거구제를 바꾸는 경우를 예상하고 한 판결이,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일단 몇 대 몇 하는 것이 비율이 달라 지지 않을까요?

○이춘석 위원 실질적으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 겠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중·대선거구제는 2분의 1로 줄여서……

○이춘석 위원 도심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지역대표성을 대표하는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간다고 하면 선거구제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인구대표성만 따져서 총합 계를 따져서 2 대 1이 넘는다고 하면 이 경우도 위헌이나 하는 것이, 이번의 결정이 선거구를 변경시켰을 때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까.

그때도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이번의 결정문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선거구제가 변경되어도 표의 등가성 문제는 마찬가지로 아닐까 싶은데요. 두 명 뽑으면 가치를 2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것이고……

○이춘석 위원 똑같이 따져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춘석 위원 선거구제를 변동시킨다 하더라도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결정문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런데 어떤 형태든 간에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사실은 투표 가치가 동등하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100% 동의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역대표성을 더 강화시켜야 할 부분들에 대한 국회의원 수가 계속 줄게 되고 또 도심지역은 지나치게 증가되어서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 헌법적 가치인 국토의 균형발전은 사실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구의 증가성만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보면 세 분은 사실은 반대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은 도심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이쪽은 인구가 좀 적다 하더라도 소선거구로 가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헌법 결정이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경우도 똑같은 원칙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그 제도 자체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중·대선거구는 숫자가 많아지면 나누면 적어지는 것 아닌가요? 소선거구제, 지방하고 비슷해지는 것 아닌가요?

○이춘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숫자를 따져 가지고 2 대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선거구제를 달리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결정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 하셨나요?

○이춘석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다음에는 이병석 위원님!

○이병석 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노철래 위원께서도 얘기하셨고 또 저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연임 헌법연구원 연수제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한테 보내온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연임 헌법연구관의 해외연수에 관한 내규를 그때 지적을 받고 다시 내규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병석 위원 다시 만들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병석 위원 보완하고 새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연임 헌법연구원 해외연수에 관한 내규를 새로 만들면서까지 여러 가지 이 제도 운영에 대한 여러 보완작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 헌법연구원 연수제도는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0년 임기가 끝난 이후의 연임 헌법연구관에 대해서 바로 이 제도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임 헌법연구관은 10년 재임 기간 동안에도 그 앞에 다른 여러 연수제도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그럼요.

○이병석 위원 실컷 다 해 놓고 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신입 초기에 갑니다.

○이병석 위원 예?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임명 받은 초기에 가고……

○이병석 위원 초기에 가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10년 가까이 된 사람들은 자리를 잘 못 비웁니다.

○이병석 위원 잊어먹었다 이거예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자리를 잘 못 비웁니다. 해외 내보내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그래서 장기 해외연수나 전문화연수, 각종 국제회의 참여를 통해서 이미 외국법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임기를 끝내고 다시 또 임기를 받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10년 임기를 받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로 연수제도가 오히려 낮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던데 여기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우리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이병석 위원** 그러니까, 10년 임기를 더 부여 받은 사람한테 또 해외에 나가서…… 조금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신입 때는 또 그런대로 여러 연수제도를 거쳐 오고, 10년 임기를 거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임기가 연장되니까 거기에다가 또 해외에 한 번 더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주고, 예산이 지금 바뀌었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원수를 줄인 것 밖에 없잖아요? 3명에서 2명, 2명에서 1명……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것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이병석 위원** 아니고……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왜냐하면 해당자들은 다 전원이니까요. 해당자가 적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게 혜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에는 장기근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상 지장이 많아서 장기근무 유인책으로 쓰는 측면도 있습니다, 혜택이라고 한다면, 내보내는 것도 행사와 관련해서 내보내기로 정했습니다.

○**이병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적절한 보수나 다른 차원의 제도적 여러 처우를 통해서 항구적으로 필요한 대로 그렇게 신분보장을 해 주고, 이렇게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지 단순히 연임 헌법연구관에 대해서 해외여행 시켜 준다는 유인책만으로, 그렇게 단기처방적인, 그게 우수 헌법연구관을 유인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겁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측면에 대해서.

○**이병석 위원** 처우와 보수와 예우와 신분보장, 이렇게 해야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위원님 덕택으로 최근에 상당히 혜택이나 신분이 좋아졌습니다. 법관들에 준하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그거 잘 살펴보시도록……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최근에 정부가 독도관광객 안전

시설, 이거 하기로 해 놓고 중단결정을 내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어제 언론에서 또 예결위에서……

○**이병석 위원** 그렇습니다. 연간 한 30만 명 내외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 방문을 합니다. 여기에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공간에 30만 명 내외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방문하는 곳인데 여기에 안전시설을 잘 설치해서 방문하는 입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안전을 지키고 또 그다음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안내원을 필요한 대로 배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응급체제를 갖추고, 이런 것은 국가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이병석 위원** 우리 조그마한 공원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구나 대한민국 영토와 관계되어 있는, 영유권 문제와 관계되어 있고, 국민들의 애국심에 의해서 그 먼 곳을 국가의 부조 없이, 그야말로 자기 돈을 들여서 국민이 스스로 그 먼 길을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독도 땅을 밟게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안전시설을 만들어서 입도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생명, 안전, 이것을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이병석 위원**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국토해양위원장 2008년도 할 때부터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는데 어디에서 반대를 하느냐, 문화재위원회에서 독도 천연기념물의 현상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두 차례 불가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2011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해서 문화재위원회의 그 문제의 부당성을, 불가의 부당성을 다시 제기해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문화재위원회에서, 독도 천연기념물의 현상에, 전체 풍광에 맞도록 한다는 전제로 지금 문화재위원회가 이것을 허가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그것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독도영토관리단, 부처를 총괄하는 관리단의 협의를 거쳐서 이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제야 올해 30억 처음 배정되어서 공사를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또 온 국민에게 입찰공고를 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국민에게 충분한 납득을 주지 않는 해명으로 중단했다, 이런 것은……

정부가 이게 뭐니까? 국민의 생명을, 안전을 지켜줘야 될 정부의 조치가 이게 뭐니까?

사무처장, 이거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여행권, 여행에 관한 기본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저도 어제 언론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병석 위원** 아니, 내 설명을 전제로 해서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좋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물론 생명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여행 권리도 보장하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독도에 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울릉도까지만 가봤습니다.

○**이병석 위원** 좀 다녀오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기회가 닿으면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병석 위원** 이게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에요?

정부가 이게 뭐니까?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될 정부가 하는 일이,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독도 다녀와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연임 헌법연구관이 해외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국내 연수프로그램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 점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내가 왜 다녀와 보라는지 아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말씀하신 취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거기에 가면 접안시설이 30년 넘

어 가지고 접안시설 콘크리트가 문드러지고 최초에 쇠로 난간 만들어 놓은 것이 녹이 슬어 가지고 덜렁거리고 흔들릴 뿐만 아니라 무너져 있고, 새로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라도 보수해야, 국가가 해야 할 책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보수해야 될 책무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석 위원** 그것에다가 문화재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준 입도관리사무소를 정부가 하겠다고 온 데, 전 국민에게 입찰공고까지 내놓고 하루아침에 취소한다고 일방 발표하고, 이거 계약의 자유에 맞아요, 안 맞아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사법적인 계약의 자유에 해당하는지는, 물론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사법적으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겠지요. 청약을 했다가 청약을 철회한 것이니까요.

○**이병석 위원** 정부가 하는 일이 이게 뭐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든가, 안전시설 중단 결정을 취소한 것은 명백한 국민의 기본권인 여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엄중하게 내가 보기에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소원을 낼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구체적으로 사건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신중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음에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처장께 예산 관련해서 하기 전에 현안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얼마 전에 연세대 학생들이 채증활동규칙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했는데 이 건 알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전해철 위원** 잘 하고 계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그게 접수된 것이 10월 2일 날 접수돼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10월 15일 사실조회 보냈고, 10월 23일 보정명령, 10월 30일 보정서 및 사실조회회보 접수한 단계입니다.

○**전해철 위원** 처장께서는 사건을 그러니까 헌

재에 오는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파악합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그래서 한 번 찾아봤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처장의 입장이나 또 헌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일단 이 채증활동규칙 보셨어요, 규칙 전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문제된 2조만 봤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나머지는……

○**전해철 위원** 채증활동규칙이 9조까지 있는데요. 이야기하신 대로 특히 2조에 보면 ‘불법뿐만 아니라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채증활동규칙이 집회에 굉장한 위축 효과가 주어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사진을 찍고 또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그러면 불법집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집회 참가자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해서 결국은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전해철 위원** 말씀하신 2조는 문제가 있나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2조요?

○**전해철 위원** 예, 2조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2조가 불법, 자기들은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이 불명확하다, 그 규정 자체가.

○**전해철 위원** 그렇게 주장하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보면 경찰청 채증 건수가 2010년 2329건, 2011년 3422건, 2012년 4007건 그다음에 2013년 5366건으로 해마다 1000건씩 늘었어요. 그런데 집회가 특별히 더 늘거나 이렇게 과도하게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처장께서 보시기에도?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 통계는 잘 모릅니다마는……

○**전해철 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이렇게 채증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별다른 인권의식 없이 또 위법에 대한 판단 없이 아주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지요? 아시나요, 채

증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장 없는 채증은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의 채증의 경우에는 영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대법원에서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것에도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것에도.

이야기한 대로 2조만 하더라도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것은 경찰의 완벽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려되는 상황’.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인권위가 권고 의견을 냈는데 아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이 채증과 관련해서요?

○**전해철 위원** 예.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의 광범위한 채증에 대해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가하여 자유로운 집회 참여와 의사표현의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의 없이 집회 참가자의 모습을 채증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채증자료 열람·변경·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해서 권고를 냈어요. 그런데 이 권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경찰에서는, 올해 3월 4일 날 권고를 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와 같이 이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여서 결국은 현재까지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거든요.

이 인권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앞에 대법원 판례야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해되는 법익이라든지 또 거기 이후에 당사자가 참여해야 되는 문제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 폐기나 이런 것을 보면 이 규칙에 따르면 그 수사기관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외부 전문가

가 참여한다든지 등등의 이렇게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잘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숫자를 늘리고 있으니 국민들이나 시민들로서는 결국은 헌법소원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께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지내왔던 것 또 관련 기관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굉장히 사회적인 환기와 큰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잘 해 주시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구원인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해철 위원 잘 전달해서 이런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서기호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구두변론 건수가 보면 목표가 2013년 12건인데 실적이 7건으로 되어 있어서 달성도가 2011년부터 73%, 18%, 58% 조금 들쭉날쭉하는데……

이 구두변론을 어떻습니까, 물론 사건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중요도에 따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구두변론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어떤 그런 입장이 뭐예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런 입장입니다. 구두변론을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입장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데 왜 2013년에는 2011년도 못미쳤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2013년에는 아시다시피 초기에 재판부 구성이 늦어졌고 또 금년 들어서는 아시다시피 통합진보당 사건 변론을 2~3주마다 돌리다 보니까 이 구두변론 넣을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저는 몇 차례 이야기드린 대로 통합진보당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가 지장받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 건 역시 신중하고 또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말에 선고할 계획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지난번 말씀 올렸듯이 한 번, 다음번 기일이 아마 이달 27일인가…… 제가 달력을 봐야 알 것 같은데요, 화요일 날로 지정되어 있고 그것은 그때 봐야지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종합적으로 아마 주장을 듣는 최종변론이라고, 명칭이 최종변론이라고 고지되지 않았나……

○전해철 위원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고 공정하게 또 신중하게 심리하세요. 촉박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구두변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4년에는 지난 2011년 이상의 달성도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참고인 같은 경우에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어때요, 이게 좀 낮은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일반 국선대리인이나 이런 분들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현재 수준 하에서는 적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전해철 위원 적정하다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예산 사정에 비추어서요.

○전해철 위원 구두변론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하더라도 참고인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하게 되겠어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것도 지금 예산 당국하고 절충해서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전해철 위원 절충을 하더라도 애초에 1800명으로 편성됐다가 올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사정으로 못 했으면 내년에 구두변론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고인의 이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물론 우리가 청구는,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일단 충당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물론 액수 1000만 원, 몇백만 원도 문제지만 구두변론에 대한 현재의 의지나 또 지향성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구두변론을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확보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처장님, 요즘 고생 많습니다. 국감 끝나고 나니까 또 예산 시즌이 돼 가지고 어제도 종일 또 본회의장에 계셨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김도읍 위원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데……

처장님, 지금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특검법이 아마 오늘 처리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특검법에 보면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고 참고인이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벌금인가요?

○김도읍 위원 과태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헌법위반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전에 동행명령과 관련해서 헌법 위반 얘기 나왔던 것은 너무 형사적인 벌을 강하게 과한다 이런 이유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그래서 아마 과태료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BBK 사건 때, BBK 사건 때 횡령배임사건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있었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냈습니다. 8 대 1로 위헌결정을 냈는데, 그 논거들이 뭐냐 하면 영장주의에 반한다, 그다음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이래 가지고 절대다수인 8 대 1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이때 BBK 사건 때는 벌금이지만 그러면 과태료로 할 때는 어때냐? 과연 과태료로 하면 위헌 소지가 없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번 특검법에서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렇게 예상됩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가 액수가 상당합니다. 지금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어제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김도읍 위원 과태료가 1000만 원 아니면 3000만 원 아마 이렇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김도읍 위원 되어 있는데 1000만 원 같으면 이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김도읍 위원 과태료 1000만 원인 것 같으면 벌금 1000만 원에 상응하는, 벌금 과태료 이 차이밖에 없지 1000만 원이면 사실상 강제력이 상당히 부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김도읍 위원 이렇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국민 서민들이 1000만 원의 이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 참고인이 결국은 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검 앞에.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김도읍 위원 그러면 사실상 돈으로, 고액의 과태료로 신체를 인치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영장주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영장이 배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거쳐서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처장님도 법조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에도 참고인에 대하여 수사 절차에서 협력의무를 부과하지 않거든요. 재판 절차에서만 증인으로 출석해 가지고 증언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하지 않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50만 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김도읍 위원 지금 형사소송법에도 수사기관에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한시법인 특검법에 수사기관에 참고인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이것은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도 반하고 과잉금지, 영장주의에 반할

것 같은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 점은 그렇게 문제가 제기된다면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관련해서 특검법,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해야 된다는 부분에 다들 공감하지만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법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김도읍 위원** 이번에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2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느 보도 매체에 의하면 2012년 2월에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2012년 12월에 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시기 조절한다고 미뤘다라는 보도 혹시 보셨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요.

○**김도읍 위원** 그래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도읍 위원** 2012년 말 현재 연구관실에서 사건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2일 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11월 2일 자요?

○**김도읍 위원** 예.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2년에 접수된 게 5건이잖아요?

○**김도읍 위원** 예.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리고 작년에 1건, 금년에 1건 이렇게 돼서 작년 말에 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김도읍 위원** 일단 그 보도가 있었는데 처장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담당 재판관에게 한번 여쭙보시고 답을 주십시오.

처장님 아시다시피 이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95년도에 인구 편차가 4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헌재에서.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김도읍 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편차비율을 3배로 줄이면서 단서로 장기적으로는 인구 편차를 2배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제시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김도읍 위원** 자, 95년도 4배, 2001년도 3배, 그다음에 2014년도 2배.

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표의 등가성 말씀하셨는데 95년, 2001년, 2014년 표의 등가성 기준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때에도 그렇게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 결정문에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어느 타이밍에서, 상황이 어떠냐 이것은 모르지만.

○**김도읍 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표의 등가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95년도와 2001년도, 2014년도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지요, 헌법재판소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선거구 획정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떠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기준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거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다른 나라도 이렇게 점차점차 바뀌어 온 것을 봤습니다.

○**김도읍 위원** 다른 나라도 점차점차 바뀐 예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해외 사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말씀해 보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얘기가 편차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면서 극단적으로는 0.7%에 대해서도 위헌선고를 한 게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이게 있어도 아마 넘어간 것도 있고……

○**김도읍 위원** 아니, 처장님 제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표의 편차를, 등가성을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한 사안을 두고 95년도는 4배, 2001년도는 3배, 2014년은 2배 이렇게 등가성을 달리한다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김도읍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두고 표의 등가성을 기준으로 위헌 결정을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5년도 표의 등가성에서 2배로…… 그러면 조금 이따가 또 문제 되면 처장님 말씀대로 1.5배로 또 결정이 나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러니까 말씀 올렸듯이 상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록 양원제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지방자치가 점차로 활성화되고 또 교통이 달라지고 또 행정구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예전보다는 점차 현대화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하나의 판단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음에는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박지원입니다.

제가 정보위 국감 때문에 법사위에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통합진보당 간부들이 저를 방문했을 때 ‘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느냐?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정당과는 우리 민주당은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이석기 의원……

○**박지원 위원** 이석기 의원은 구속피고인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선고가 2월, 구속 만기 전에 해야 되니까 2월에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선고는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에 의거하거나 법조계에서는 이석기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있는 2월 이후 내년 3, 4월에 예상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언론의 예상 보도나 법조계의 예상이 헌법재판소를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장이 국정감사 오찬에서 통상적으로 덕담 건배사를 하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소신껏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 말씀 중에도 ‘재판이기 때문에 뭐라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금년 말에 선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제가 오후 질의에 사무처장께 질문을 하니 ‘조속히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질문합니다.

지금 법조계에서나 우리 법사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적 관심이나 언론계에서도 과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어느 곳이 최고사법기관이냐 하는 것으로 논란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박지원 위원** 처장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양 기관이 같이 최고사법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같이 한다, 물론 처장께서도 고등원장 하실 때는 견해가 조금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또 현재로 오면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지요. 뭐 저희들도 똑같은, 그게 인지상정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고 항간에서는 국민들은, 법조계에서는, 언론계에서는 예측을 뒤엎는 이런 헌법재판소장의 소견 피력이나 선고를 12월 말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보다도 헌법재판소가 상위 사법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의혹을 많이 갖고,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저에게도 그것을 묻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석기 피고인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은 대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러한 일종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런 측면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고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 선고 일자리를 가지고 그런 것과 결부시켜서 생각할 문제는 전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선고날짜 때문에 어떤 상위……

○**박지원 위원** 굉장히 언론이나 법조계 말씀을 잘 안 듣고 계시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 얘기는, 신문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처음 듣고, 그러면 그러한 회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선고날짜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관련이 없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박지원 위원** 없어야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우려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음에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 김진태 위원입니다.

지금 통진당 사건 말이에요. 연내에 선고한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뭐가 많아

서, 수사기록이, 재판기록이 하도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가처분은 안 하는 거예요, 가처분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지난번 말씀 올렸듯이 가처분도 파급효과가 본안 못지않게 크고 그리고……

○**김진태 위원** 그러면 본안 못지않게 크면 같이 선고하겠나 이거예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언제 또 할지도 모르지요. 지금 최종변론을 이번……

○**김진태 위원** 그러면 그 가처분제도 본래의 취지가 뭐예요? 이런 경우에 본안에 앞서서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 당에 지금 계속 국고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김진태 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다른 평상시 할 것은 다 하겠다고 하고, 그래 가지고 현재의 위상이 갖춰지겠습니까?

해외연수 지난번에 국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도 가겠다고 지금 예산 3억 5000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러니까 그게 대상자가 많은 게 아니고 한 번 하고 나면 몇 년 없고 그렇습니다. 몇 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김진태 위원** 2014년도 기존에 해외출장 갔다 온 보고서들 다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김진태 위원** 다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다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거 한번 전부 제출해 보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대상을……

○**김진태 위원** 지난번에도 통진당 이런 사건을 두고 1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가처분 결정도 안 해 주면서 상파울루주 대법원 그것은 그렇게 꼭 가야 되는 것이다, 갔다 온 보고서 다 내 주시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김진태 위원** 내년도에 지금 가야 되겠다고 계획 세운 것들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인지 소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

○**김진태 위원** 그리고 또 연구관 해외연수예산이요? 4억 8000으로 되어 있네요? 장·단기 이것은 기간이 얼마 만큼 갔다 오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장기는 1년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는 그쪽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미국 쪽은 1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 쪽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지금 현재는 통진당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무슨 해외연수 다니고 출장 다니고 할 때가 아니예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활동비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김진태 위원** 무슨 대학생 UCC 만들고 웹툰 공모를 하고, 다 좋은데요, 통진당 사건을 1년 이상을 끌면서 대학생 UCC 하고 웹툰 만들면 뭐 합니까? 정말 좀 이것은 비상한 각오로 비상사태 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단니까요.

헌법재판관들 출근 저지 투쟁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들어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런 일을 듣지도 못했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김진태 위원** 그거 지금 하겠다고 인터넷상에 막 돌아다니는데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거기에 올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김진태 위원**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웹툰 만들고 UCC 만들어도 1년이다 돼 가도록 지금 이러고 있어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국민의 신뢰고 뭐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2개월, 행정수도 특별법 때는 3개월 만에 했던 말이에요.

하여튼 간 신속하게 제대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요.

오늘 세월호 특별법을 가지고, 이거를 한다는 데 제가 보기에는 좀 위헌적인 요소가 많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에 BBK 사건 특검법 때 동행명령장이 위헌이 난 적 있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김진태 위원** 그 사유가 뭐니까? 법관이 발부한 영장 아니고 위원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사실상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위헌이라는 취지로 난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김진태 위원** 그러면 그때는 위헌이었는데 지금 세월호 사건에는 동행명령장 다시 이렇게 슬그머니 법에다 끼워 넣어도 문제가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아마 그때 그것은 말씀 올렸듯이 동행명령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거는 아니고 금방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형사적인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태료로 규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제가 지금 법안도 보지도 않아 가지고……

○**김진태 위원** 그렇게 추정이 되지요. 그러니까 전에 벌금형으로 돼 있어서 지금 과태료 그것만 바꾸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러면 정도에 있어서 영장주의라거나 과잉금지라든가 이런 것에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것도 역시 추측이 됩니다.

○**김진태 위원** 벗어날 수 있다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아니, 그렇게 추측된다고요. 그것 제가 잘 모르겠고, 정확한 법안도 모르겠고요.

○**김진태 위원** 지금 현재나 사무처장의 견해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뜻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만드시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김진태 위원** 그 현재 결정문에 벌금이라서 문제라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영장주의라는 게 그 거예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법관의 영장에 의한 것이 헌법상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김진태 위원** 그러면 벌금으로 할 때는 안 괜찮고, 과태료로 할 때는 괜찮다? 과태료 1000만 원 내고 그거 가져가서 집행하면서 ‘당신 안 나오면 벌금 1000만 원 당장 압류 들어갑니다’ 하는데 그게 신체의 자유가 제한이 안 되겠어요?

그거를 영장이 아니고 위원장이 막 발부하는데 괜찮습니까, 그거?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위원님과 같은 그런 견해도 있고 양쪽에서 절충해서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진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음에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작년 예산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일 열심히 하시고 뜬금없는 어린이 헌법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를 좀 보면서 기본적인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한다, 장기미제들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니까 신중하게 제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게을리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꼭 지적하고요.

그러면서도 틈틈이 어린이들을 위한 헌법교육을 하는 거를 보고, 사실 현장에서 좀 보고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되게 부드럽다, 권위적이지 않다 그리고 헌법 관련해서 법으로 딱딱한 느낌만 갖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들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넓게 만나면서 훨씬 더 세상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부분을 해 주시는 것, 전제 조건은 헌법재판소 장기미제들 빨리 해결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던 우리 사람들의 문제, 현대차 비정규직의 문제, 제발 수천일 가지 말고 빨리 해결하시라, 그러면서도 또 알기 쉬운 헌법 이야기 이런 것을 전파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함으로써 오히려 생동감 있는 헌법재판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을 만들어도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고 완벽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고 이러면서 또 바뀌는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한 4 대 1, 3 대 1, 2 대 1,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계속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서울은 오히려 사람이 많지만 선거운동하기도 쉬울 만큼 작은 공간에서 많이 만나요, 저는 서울이고.

그런데 지방은 서울과 불균형 발전인데, 그리고 이런 선거구 재획정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또 서울로 서울로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헌법의 가치 속에서 사람 숫자의 증가성도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 영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소수 의견으로 그 이야기를 짚고는 있지만 저는 대혼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지방이 오히려 대표성이 더 있어야 하는데, 지방행정구역도 있고 땅의 넓이도 있고 더 어려운 농촌의 민심도 있고, 농촌 경제부흥을 가지고 오려면 오히려 지금 형태로 놓아뒀다가 농촌이 더 발전하게, 지방이 더 발전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셨겠지만 6 대 3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혼란을 가져오는 이 문제점들은 간과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또 이야기하시고, 제가 오히려 수도권 의원이니 까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의 증가성이라고 하는데 여야가 있으면 둘이 경쟁해서 하는 거지 ‘어떤 의원은 더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어서 당선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여야를 놓고 하는 것이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이후에 꼭 이것대로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서영교 위원 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전문위원도 지적하고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예산과 관련한 것이니까, 베니스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사업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 방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가서 회의 하나만 참석하고, 일들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베니스위원회 참석할 때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세계헌법재판관회의 하면서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갔었는데 저는 그런 일을 할 때 국회의원들에게—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적극적으로 오셔서 그 귀한 행사에 참여하게 유도를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뻣뻣하지 않나……

다른 나라의 대법관 모시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오게 하고 작업을 하면서, 우리 국

회 법사위 아니면 국회에 있는 의원들이 그런 현장에서 같이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달랑 초청장만 보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성과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낮추는 자세로 함께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서영교 위원 그리고 참 애를 쓰셨고 잘하셨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아쉬운 측면 이야기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참석한 국가들도 그렇고 앞으로 지속적인 연결, 사업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SNS 등 홍보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팟 캐스트, 저는 아이디어가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시고, 대신 예산은 남용하지 마시고 예산을 최소화해서 팟 캐스트로도 만들면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저희 방에서는 이 부분 꼭 필요하냐 이렇게도 지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두 가지 양면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면서 잘 성과 있게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홍보활동 중에 공모전 사업 시상금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하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1분 더 드리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1분만, 잠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국선변호인 중에 여성이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인지 예산으로 그리고 또 구성비의 적절함을 위해서 특별히 여성 국선대리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찾아서 저희들에게 변화되었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해외연수, 이것을 외유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인지 아닌지 꼭 다시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헌법재판 전문학술지 발간이 중복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중복되면 다시 시정하시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여러 가지 지적해주셨는데 전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한마디만 변명을 할까 싶은데요.

○서영교 위원 예.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아까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뒷바라지해 주셔 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은 저희가 물론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베니스위원회에서 그 기본적인 행사를 다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요청이 와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의 리셉션과 끝나는 폐회식에는 팬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리셉션에 와 달라는 거는 완전히 부탁드리는 건데, 그래서 차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 했는데도 서 위원님과 또 홍 위원님께서 와 주셔 가지고 정말 자리가 훨씬 더 빛났고 잘 마치지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당부를 하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되셨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박민식 위원님!

○박민식 위원 처장님, 저도 정보위원회에 갔다 온다고 지금 봤는데 우리 현재의 예산안이 준 모양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박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고 법원으로서 최고 법원은…… 물론 홍보비나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장님이든 또 사무처장님이든 뭔가 책무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줄은 데 대해서요?

○박민식 위원 조직의 수장이면 욕을 들어 먹더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예산이든 인력에 대해서 목청을 돋우어야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위원님, 감사한

말씀인데요……

○박민식 위원 아니, 감사고 감사 아니고 간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게 준 것이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워낙 큰 덩어리가 빠지는……

○박민식 위원 이게 뭐예요, 이게? 대한민국 예산의 0.015%, 그 참…… 아니,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우선 그게 안 서지요, 영이 안 서는 거지요. 더 이상 예산을 말할 그것도, 흥이 안 나요.

헌법 문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법사위든 대정부질문에서도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도둑 뇌사 판결이라고 그 사건 들어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들었습니다.

○박민식 위원 헌법재판소에 계시니까…… 아니, 새벽 3시에 남의 집 쳐들어 온 도둑하고 엄마하고 누나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그 청년하고 대한민국 법이 도대체 누구 편에 서야 돼요? O, X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위원님이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에 공평하게 해야지요.

○박민식 위원 아니, 무슨 말이 그런……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러니까 죄를 지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박민식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새벽 3시에 들어온 도둑하고……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거에 상응하는 거를 받아야지요. 새벽 3시에 들어온 거는 새벽 3시에 들어온 거에 상응하는……

○박민식 위원 아니, 지금 법을 집행하는 대한민국 판사·검사·경찰……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보면 믿을 데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한번 믿고 싶은데 처장님 답변이…… 아니,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아니, 그렇다고 해 가지고……

○박민식 위원 법이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정말 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국민 편 아니겠습니까, 국민.

○**박민식 위원** 헌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헌법에? 프라이버시권이 있지요. 행복추구권이 있지요. 신체의 자유가 있지요. 가족을 또 그거 할 권리가 있지요. 셀프 디펜스, 자위권은 천부의 권리에요.

국가가 그 새벽 3시에 도둑놈 못 들어오도록 잘 지키면 그 사람이 뭐 하려고, 자기 지킬 필요가 뭐 있어요? 국가가 못 지켜 줬으니 자기 스스로 자기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당방위, 자위권이라는 게 자연법적인 권리입니다. 당연히 헌법상의 권리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민식 위원** 진짜 참, 우리나라 법 하시는 분들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국민들 어떻게 비분강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선거구 획정에, 지금 헌재에서 한 그 선거구는 관련이 없고 합시다만 또 어떻게 보면 도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요.

그러나 제가 총리한테도 대정부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자꾸 이렇게 되면, 투표 가치의 그 형평은 알지요. 알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나중에 도시에, 쉽게 말하면 지금 서울·경기에 우리나라 인구가 근 한 3000만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서울·경기에요? 반 이상이 있는……

○**박민식 위원** 반 이상이 있지요. 그러니까 도시는 어떻게 보면 과잉 대표가 되는 것이고, 저 땅 넓은 우리 전라도나 경상도나 강원도나 그쪽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거기는 과소 대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걱정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점점 더 사실은 헌법 위반되는 현실을 이 결정을 통해서 초래했다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왜냐하면 이런 결정 때문에 점점 더 도시의 이익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지방의 이익 대표할 국회의원 몇 명 안 되니까 힘들겠지요. 참 정말 걱정인데……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뭐 현실적으로……

○**박민식 위원** 그런데 그거 현실적으로 내년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박민식 위원** 그런데 정 못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정 못 고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만 하여간 법의 공백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민식 위원** 아니,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는 해야 되고 지형·지리적인 그 특징 또 행정구역 이런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의 취지를 따르려고 백방으로 손을 써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틀림없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런 경우가 안 생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박민식 위원** 아니, 생길 수밖에 없어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의원님들이 합의 해서 법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식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법 만들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 그 결정에 반하더라도 용인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잘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민식 위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해 놓고 그러면 사후처리는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식입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의원님들이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민식 위원** 그렇게 너무 한가하게 답변하시면 국민들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결정은 해 놓고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아무리 노력해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못 맞추는 경우가 저는 틀림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국회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어떤 취지를 충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나 또 여러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사후관리라고 할까 위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황을 계속 물어보고 또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서 보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관 부처에.

○**박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아, 홍일표 위원님 계시구나. 빠뜨렸습니다.

○홍일표 위원 뭐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번의 선거구, 투표 가치와 관련된 결정 그거는 그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판소로서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내용도 대체로 다른 나라의 예를 많이 참고해서 우리나라의 수준에 비추어서 큰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달리 흡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미칠 파장이나 영향 이런 것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결정을 했는지는 좀 의문스럽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법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법원은 권리구제와 동시에 여러 가지 사법정책적 방향도 있어서 유사한 면이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많은 사건들은 다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될 경우도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국회가 또 슬기롭게 잘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지만 현재의 결정은 항상 정치적 파장과 또 그것이 우리 사회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꼭 더 유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홍일표 위원 우리나라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변신하는 데 최초로 성공한 나라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홍일표 위원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ODA 사업이라는 거를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우리 범조계에서도, 사법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많이 시행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개발도상국 관련 공무원들의 견학을 많이 유치하거나 또 그런 데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해 왔는데 본격적인 사업으로는 그동안 해 온 것은 없나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있습니다. 몽골이나 인도네시아 또 저쪽 미얀마인가요, 이런 데 헌법재판소 직원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연수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홍일표 위원 내년도의 개발도상국 대상 초청 연수사업, 이게 그겁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홍일표 위원 이게 예년에 계속해 왔던 겁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해 오던 겁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이 5100만 원 예산 규모는 어떤가요, 예년에 비해서? 비슷한 건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똑같은 액수라고 그러합니다.

○홍일표 위원 같은 액수예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홍일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내용이 위탁사업비 2000만 원, 국외업무여비 2000여만 원, 차량임차료, 통역장비, 준비팀 운영, 항공료, 숙박비, 리셉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분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듣고 가는 것보다는 실제로 돌아가서 자기네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 주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 역량을 높이려면 와서 보고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하면 솔직히 이게 너무 액수도 적고 이것을 조금 더 높여서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쥐어 주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구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온라인 홍보사업비는 한 4억 8000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솔직히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 상담하는 것 있지요, 지역상담실 운영?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예.

○홍일표 위원 이런 것을 몰라서 이용을 못 한다 해서 이것을 홍보하는 것 이런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헌법재판소 기능을 온라인에다가 계속 홍보한다는 것은 그게 과연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온라인이 너무 광고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비싼 건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 헌재 기능 홍보, 이게 그렇게까지 할 거리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평가를 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 그 점도 두루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보충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도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 고자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선거구 관련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또 수도권에 초집중되는 대한민국의 결함,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막는 장애물, 이를 어떻게든 뜯어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 선거구 확정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서 인구수를 더 우위에 둔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를 확정할 경우 이러한 수도권의 초집중, 지방의 고사가 더욱더 가속화·심화·악화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의 대표성은 그로써 같음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헌법결정문을 인용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우위와 열위는 압도적으로 중앙정부가 우위에 있습니다. 어찌면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종속적 지위에 전락해 있고 국가 세원도 8 대 2 정도로 그렇고 등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정착이 됐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을 관철할 수 있다라는 것은 현실을 매우 간과한 것이다. 또 한국사회의 독과점이 매우 심각하다는 현상도 간과한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 따라서 선거구 획정을 넘어서서 선거구제 또 선거제도 등 전

반적인 정치 관련 제도에 대해 우리 국회가 다듬고 다시 한번 개혁을 할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순기능을 한 측면이 있다라고 자성을 해 봅니다.

헌법상 국민주권 또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전략에 어떠한 시스템이 적합한가는 국회에서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잘 다듬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우윤근·이한성·이춘석·서기호·김도읍·노철래·정갑윤·이상민·서영교 위원님들 각 서면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서면질의와 함께 기타 서면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1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늘 쟁점 법안에 대해서, 타 상임위로부터 들어온 법안 또 우리 고유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마침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계시니까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쟁점법안이 있으면 교섭단체대표, 지도부 사이의 정치적 논의를 거쳐서 합의에 이르는 예가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나쳐서 제가 이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해 왔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의 합의제 기관으로 국회가 있는 것은 전 국회의원 각각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심의·의결에 참여해서 그 의사결정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쟁점법안일수록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교섭단체대표 사이 또는 소위 TF팀 등을 구성해서 그러한 진행상황 등을 각 의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밀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의권은 중대하게 침해가 된다 또한 나아가서 국회 입법권이 침해가 된다, 그러면 뭐 하러 300명 국회의원을 뽑았고 국민의 혈세로 300명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운영되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원내대표 및 당대표 또 몇몇, 정책위의장 등으로 구성된 그런 분들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행이 더욱더 일반화되는 현상은 매우 옳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정의가 실제적 정의를 대신할 수 없고, 절차적 정의는 실제적 정의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정의입니다. 특히 국회는 그렇습니다.

쟁점법안일수록 더욱 치열하게 공론화 과정과 국회의원들이 치열한 논의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인 저조차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진행 상황을 알게 되거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관객에 불과한 지위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은 매우 마땅치 않다, 각 국회의원들은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와 권한 또 책무가 담보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고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섭단체라는 제도는 국회 운영의 편의상, 기능상 필요한 제도인 것이고 그에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섭단체대표 사이의 과두체제로 흘러서는 의회주의가 이런 부분에, 또 의원들의 입법권에 상당히 침해, 소외,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법사위원장으로서는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한해서는 사정이 그래서 양해를 합니다만 제가 법사위원장 직책을 갖고 있는 한 앞으로는 이런 현상을 그대로 용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더더구나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의안의 상정시기가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5일 이후에 상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보편적, 일반적 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하면 그날 오전에 해서 한두 시간 있다 법사위에 와 가지고 법사위에서 검토보고서도 못 쓰는 일들이 아주 상습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있는 한 또 법을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는 저로서는 이를 해낼 것이다라는 것을 두 대표님은 물론이고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께도 말씀드리는 바인 만큼 이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이런 저의 뜻을 천명하고 이런 점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완구 의원 고건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만큼은 양해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완구 대표님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3시45분)

○위원장 이상민 회의 진행은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고유 법을 심의하고 나서 타위 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서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류지영·이만우·김태원·안홍준·강은희·김현숙·윤영석·윤명희·최봉홍 의원 발의)(계속)

(13시46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홍일표 위원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홍일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홍일표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몰수대상 재산이 범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때에도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개인, 법인 및 경영지배·경제적 연관 또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추징판결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제삼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몰수·추징판결 집행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의 제공 요청,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도입 등 강화된 재산추적 수단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기록을 위해서 하나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법안의 입법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서 과연 헌법에 합치되는가, 법의 일반체계에 맞는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헌법상 사법체계에 어긋나는 점이 많다, 그리고 과연 이 법이 통과되어서 효력을 발휘할 때에 얼마나 그 효력이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덧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수의견을 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3시49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제안을 누가 했나요?

수석전문위원, 이 제안을 누가 했어요? 법률안 발의 이거 누가 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국회법은 운영위원장이고요, 정부조직법은 안행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이 오셔서 제안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쟁점법안인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부터 제안자들이 꼭 오도록 하십시오. 예?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예.

○위원장 이상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됨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전행정위원장이 제안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부총리를 신설하고, 둘째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여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소방 및 해양경비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연금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

며, 셋째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로부로 개칭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예.

○**박지원 위원** 오랜만입니다.

질문 끝냈습니다.

아시겠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장관 됐다고 그러면 안 돼요.

○**위원장 이상민**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전해철 위원** 다른 대체토론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

○**전해철 위원** 혹시 이걸 의결할까 봐 이야기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앞에 2항에 대해서도 그렇고 2, 3, 4항이 다 지적했던 대로 좀 정치협약에 의한 것입니다.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대체토론을 한 번에 하고 의결을 2번은 했다 하더라도 3번과 4번은 함께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을 같이 하겠습니다.

**5.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3시53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5항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위원회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입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

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규명 활동 및 청문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구체적 수정내용은 첨부한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함께 상정된 3, 4항 그리고 5항 같이 함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김도읍 위원** 진상조사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김도읍 위원** 동행명령……

○**위원장 이상민** 죄송합니다.

일용 5분씩 하고 필요하시면 더 제가 유연하게 드릴게요.

○**김도읍 위원** 지금 민간조사기구에서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 원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괜찮습니까,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헌법재판소의 그 동행명령 위반에 대한 벌금형에 대한 위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로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또 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한데 우리 국회에서 논의하는 대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 당시에 BBK 사건—특검이지요—특검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벌금으로 한 게 위헌이다 이게…… 그 당시 쟁점은 뭐냐 하면 벌금이다, 과태료다가 문제가 아니고 동행명령에 대해서 영장주의에 반한다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해 가지고 8 대 1로 위헌이 난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벌금이나 과태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소명되면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검찰에서도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한다든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수사권도 없는 조사위원회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증인,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단을 부여하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법체계상으로도 안 맞거든요. 검찰에 고발할 전 단계의 민간기구의 조사기구에서 이렇게 강력한 증인, 참고인 소환에 대한 강제수단을 하는 것 영장주의에 반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요. 또 보면 참고인이 자료나 물건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 3000만 원에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들이 자료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범죄소명이 있다고 그러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물건을 압수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똑같은 유형인데 수사기관에서는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고 민간조사기구에서는 영장 없이 내놔라, 안 내놓으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위헌 소지 정도가 아니고요, 상당히 위험한 법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그런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이제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여야가 합의를 했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 거쳐서 법사위에 올라와서 이제 논의가 되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정리를 하셔서 처리되는 대로 저희들은……

○김도읍 위원 세월호 사건이라는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서 법안을 만들기는 하는데요. 자칫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이 뒤흔들릴 수 있고 이런 전례를 남기다 보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전제인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이 완전히 무너지면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전례가 된다는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김도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우선 세월호 특별법이 이제 통과된 게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엄청난 참사에, 워낙 세월호 유가족은 기소권과 수사권까지도 주장했을 정도입니다. 기소권이 검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내용이고 이 법안은 특별법입니다. 오죽하면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야 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어 버릴 수도 있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내 아이, 내 부모를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지사지해서 그 상황으로 볼 때 왜 내 아이가 죽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왜 선장이 아이들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 날 그 안개 낀 날 출항을 하라고 했는지, 정말 유일하게 세월호 하나 출항했는데…… 온갖 것이 억측이 되지요. 그런 속에서 특별법이라고 만들어진 것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소권이 형사·검찰에게만 독점되어 있는 부분은 소중하게 보지만 대한민국밖에 없다. 필요할 때는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도 꼭 필요한 경우에 국회가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우리 해수부장관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더 마음 넓게 따뜻하게 아픈 사람들 만져 주는 중간 역할 꼭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우리 정종섭 장관님!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예.

○서영교 위원 이 와중에 소방관들은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오히려 조금 더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되고 우리가 상당히 박봉에…… 어려운 상황이면 소방관들을 해결해 준다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인사권 독립 그다음에 재정 독립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조직 독립 이런 것이 조금 확보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행부에서 행자부로 바뀌는 것이지요? 소방관 부분 그리고 다시 해양경찰 부분이 또 행자부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난번에 행안위에서 안행위로 바뀌면서 중대본부에 4월 16일 날 운영 매뉴얼이 없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정말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에 가서 필사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인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로 시간에 쫓기면서 법에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놓치고 간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도 주무실 시간 없이 이 귀중한 것을 제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 상황에서 또 운영 매뉴얼조차 없으면…… ‘왜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나’라고 물으니 중대본 관계자들이 ‘저희들에게는 역할 분담도, 운영 매뉴얼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행부는 지속적으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법제처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고 법제처가 무슨 상황인지 바쁘다며 미뤘다고 했고 이런 것이 감사원 결과에 그대로 나왔는데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예, 그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하나도 놓치지 말고 보시지 않으면 또다시 이 급하게 만든 조직이 허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소방관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재정 부분 제대로 보셔서 꼭 더 도와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그 소방관 부분에 대해서는 서 위원님과 제가 생각을 같이합니다. 이번에도 가능한 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저희 원래 목표는 달성 못 했지만 그런 의지는 여전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허점이 없도록 제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박지원 위원** 물론 지난 6개월 이상 이 4개 법안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고 국민들과 세월호 가족들과도 충분히 협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정부조직법 해경·소방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주영 해수부장관은 6개월이 넘도록 진도에서 외식 한 번 하지 않으시고, 저도 몇 번 가서 뵙고 만나자고 해도 그 안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제 고향 진도사람들이 참으로 존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3개 법안이 부분적으로 여야

또 우리 위원들 사이에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에서, 의원총회에서 이미 인준이 됐기 때문에 또 본회의가 지금 2시에 열려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그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병석 위원님!

○**이병석 위원** 드디어 세월호 3법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타결이 되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아마 상정이 돼서 가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민생경제 또 국민 안전 최우선에 국회 여러 의사일정이 잘 진척되기를 바라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차례로 줌, 이 3법 합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해양경찰청은 결국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국민안전처 국무총리 직속으로 그렇게 흡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질 내용을 보면 해양경찰청 업무가 그대로 온존돼 간 것 아닙니까? 정보 분야의 기능을 빼고 나면?

해양수산부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거의 그대로 다……

○**이병석 위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소속 또 국토해양부 소속 또 그러다가 농림해양수산부 소속, 그러다가……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아닙니다. 농림해양수산부에는 아니었고……

○**이병석 위원** 다시 해양부 소속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소속.

○**이병석 위원**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이병석 위원** 그리고 이제 또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찰청 조직만 가지고 만날 동가식서가속으로 말이지요, 국가조직을 이렇게 무슨 장기 뜯어 가지고 이식하듯이 그때그때 갖다 붙이는 현상이 바람직합니까, 안 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님 입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해양경비안전본부라고 해 가지고 국민안전처 소속의 한 부서로 가게 됐는데, 본래 해경은 해양영토주권과 해양에서의 여러 가지 질서를 책임지고 있던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조·구난까지 하고 있던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줄곧 해양부 소속 외청기관으로

존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안전처에 소속되는데 안전이 더 우선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예를 들어서 말라카해협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유수송로는 어디에서 경비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거기는 우리 해양수산 부하고……

○이병석 위원 해양경찰청이 하잖아요, 이제까지 해 온 것은?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해양경찰은 거기까지는……

○이병석 위원 거기에 2개의 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주권 그다음에 고도의 해상치안, 그러면서도 거기에 구조·수색·구난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석 위원 그런데 국가의 해양주권을 지키는 기능을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여기 떼서 붙이고 저기 떼서 붙이고 이쪽으로 갖다 붙이고 하는 이런 해양경찰청 기능의 이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납득되지 않잖아요? 이거 한 번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병석 위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정종섭 장관 말이지요, 이번에 국민안전처로 해서 어쨌든 해양경비 기능하고 또 소방방재 기능을 흡수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예.

○이병석 위원 소방방재 부분 어느 곳에, 테러 대응에 대한 기능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 두 기능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 기능에 테러 대응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병석 위원 그다음에 해양경비안전본부, 해경에 테러 대응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둘러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처 이름은 뭐로 되어 있어요? 국민안전처예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완벽하게 국

민의 생명을 지켜 내기 위해서 필요한 차원을 한 단계 격상시켜 가지고 국무총리로까지 소속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일원화된 지휘통제체제로 완벽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국민안전처 신설 아닙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병석 위원 지금 현재 가장 현대화된 시점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최후의 공적이 됩니까? 테러 아닙니까? 이 테러에 대한 대응은 어디에서 해요? 국민안전처 밖의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테러 부분은 일어났을 때 어디에서 해요?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지금 경찰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경찰이 그것도 안 해요. 정부 부처 14개 부처로 지금 나뉘져 가지고 육상에서 일어나면 경찰, 바다에서 일어나면 해경.

그러면 지하철에서 일어나면 어디에서 해요?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이번에 정비한 것은 국가재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체계를 다시 잡은 것이고,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군도 있고, 테러 대응……

○이병석 위원 재난 대응이 국민 안전 아닙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예,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테러 부분에 대한 대응은 국민안전처에 왜 안 넣은 거예요?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그 부분도 결국은 다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국민안전처를 만든 전체적인 시스템은 국가재난에 대한 그런……

○이병석 위원 테러가 일어나면 국가재난이 아니에요?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그 부분도 포함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이거 향후에 검토하세요.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국가 기능을 정확하게 필요한 대로 조치를 취하고, 지금 현대화된 전 모든 국가가, 테러 대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 존립과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소방청에 갖다

놓고 해양경찰청에 그냥 갖다 붙이고 국민 안전을 지킨다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부분에 테러를 빼고 될 더 최우선의 공적으로 삼고 거기에 대응 체제를 만들어요?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기능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차라리 국가안전부나 국민안전부로 승격시켜서 필요한 완벽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정부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민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대체토론 하고 그 기회는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이미 양 원내교섭단체 대표끼리 합의하고 의총 결과 해서 거의 통과 거수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토론보다 시간 절약 또 효율적으로 해서 소수의견 붙이는 것으로, 그런 중심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저도 소수의견을 낼 의견이 있으니까.

○김진태 위원 제가 아까……

○위원장 이상민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토론하지 마시고 의견,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김진태 위원 알겠어요.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세월호특별법 위헌입니다.

간단하게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명령제에 대해서 참고인은 재판 전 단계에서 출석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협조 의무만 있는 거지. 그런데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니지요. 헌법상 영장주의의 가장 핵심은 법관이 하느냐 그거거든요, 법관이 하느냐. 특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나중에 어떤 체재를 가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전에 벌금으로 하던 것이 위헌이었는데 이제 과태료가 되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더 문제가 많습니다, 더 문제가. 이것은 명령권자가 체재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이. 그전에 벌금 할 때는 그나마 법관이 봤는데 이것은 본인이 그것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이게 구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청문회 이것은 또 뭐니까? 청문회는 아예 나가지 않으면 징역형까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의 위배 내지는 잠탈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게 소수의견으로 덧붙이겠습니다.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조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사실 정부조직법 초기에 우리 당내에 TF팀 해서 이 문제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도록이면, 되도록이 아니라 지금 안전행정부 안에 있어도 제대로 처리를 못했는데 말은 총리실 밑으로 가니까 격상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집행 기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한다면 국민안전부로 했어야 맞습니다.

문제는 많은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충실한 그러한 것들을 했어야 한나라는 점을 하면서, 저는 반대하는 의미보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그러한 문제점이 시행 과정에서 확실히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런 의견을 기록에 덧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한 번만……

○위원장 이상민 반대를 하든 안 하시든 양해를 하시지요. 통과를 전제로 소수의견이든 말씀을 해 주시지요. 3분 정도.

○김도읍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행명령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법의 목적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막대한 피해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 아닙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조사위의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규명이거든요.

그리고 청문회는 청문회 조항에 가면 청문회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된 조사위에 불출석하면 과태료, 자료 제출 거부하면 과태료, 조사위의 활동을 보조하는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징역 3년 이하에 벌금 3000만 원 구조가 이게, 장관님께서도 법조인 아니십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거예요. 과연 이 청문회를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정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이 체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논의를 많이 거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논란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까 입장하고 비슷합니다.

○**김도읍 위원** 저는 법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주된 조사위에 불출석, 자료 제출 거부하는 과태료로 넘어가고, 조사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청문회에서는 출석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 거부하면 징역형으로 가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법체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춘석 위원**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분만.

○**위원장 이상민** 말씀하세요.

○**이춘석 위원** 지금 오늘 통과되는 법들 세 법이 다 세월호 참사 사고로 발생한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월호의 아픔,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세월호 참사 사고의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가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누구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헌법으로 보나 여러 가지 규정으로 볼 때 그 책임의 정점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사고도…… 앞으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 군의 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군을 통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안전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호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그 논리적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불가피 총리실로 놓은 것은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장차 이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국민안전처의 소속은 국민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한테 귀속시키는 것이 맞다, 추후에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대체토론이나……

홍일표 위원님!

○**홍일표 위원** 1분만……

○**위원장 이상민** 3분……

○**홍일표 위원** 세월호법 협상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잠깐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병언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유감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3법이 다 많은, 법적으로 따지면, 특히 우리 법조인의 시각에서, 법사위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문제점을 미리 다 제거하지 못한 데에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우리 사회가 딱 막혀 가지고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이 사건에서 이 법을 만들고 처리하는 과정까지의 여러 문제점들은 법사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 회고하면서 반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이 또 터졌을 때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런 국회에서의 매뉴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런 점을 저는 같이 공감을 표하면서 오늘은 토론을 거의 마쳤습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간사님, 3분 드릴게요.

○**전해철 위원** 박지원 위원님께서 가능한 한 토론을 사실 자제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도 하나하나 내용에 대한 것보다도 과정을 이야기드리면, 실제 세월호 참사 특별법은 애초에 진상규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밖의 유족분들이나 시민사회 분들은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권 관련해서는 법학자 300여 분이 전혀 법체계에 문제가 없다라는 성명서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십몇 차례의 협상과 협의 과

정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런 궁여지책에서 그렇다면 조사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미흡합니다. 말씀하신 위헌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고 또 현재 판결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미흡하지만 여야 협상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정부조직법 관련해서는 사실은 전체 내용보다도 치명적인 약점, 시행 시기에 대한…… 오늘 안행위에서 경과규정으로 거의 편법·변칙, 저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동안 여야 합의 협상 과정에서 양해하고 넘어갔던 합의 정신이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지원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조금은 토론을 자제하자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정부조직법 역시도 내용과 형식, 절차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훨씬 더 열려 있고 또 효율적인 그런 토론이나 TF나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소수의견 하나 붙이겠습니다. 정부조직법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매우 마땅치도 않고 결국 3년 정도 밖에 가지 않을 것이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초기구조 실패한 책임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구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 운영 등의 문제인데 사고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구를 해체하고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면 그게 최고의, 정부기구로서 있어야 될 정부 부처가 어디 있는가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해경이 해난구조, 우리 어선 보호의 임무도 있지만 해양 주권을 수호해야 되고 가까이 있는 중국이나 일본은 이미 해경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만 구조와 안전 중심 조직의 해경이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문제 제기합니다.

소방방재청, 10년 전 100만 명 넘는 분들이 청원 서명운동을 벌여서 독립 청으로 이미 발족했습니다. 재난 현장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어렵게 만든 조직 독립을 다시 또 원상대로 복귀시켜서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소방청은 세월호 사고 구조와 직접적 관계도 없습니다. 따라서 30일 날 소방청 해체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소방청장과 차장을 동시에 해임하는 처사는 매우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합니다.

즉흥적 결정이었고 이미 저희 야당은 다음 대선 때 공약을 내걸고 정권 잡으면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원상회복시키겠다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후보도 아마 그럴 것이다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불과 3년 후에 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 이런 정부조직 개편을 우리가 할 수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점에 참으로 자괴감이 든다는 말씀을 소수의견으로 덧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총장님, 좀 계세요. 모처럼 법사위에 오셨는데 위원들하고도 인사 나누셔야지요.

그러면 양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팀을 하셨던 위원님들에 대해서 노고와 그 인내심을 높이 평가하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협상을 해내셨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본 법사위 전체회의는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본회의가 끝나면 속개해서 대법원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헌법재판소 소관

나. 대법원 소관

○**위원장 이상민** 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발췌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줄 친 부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통합 검토입니다.

법원조직법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을 두고, 법원 직원·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생의 축소에 따라 사법연수원 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법원도서관 도서 이관, 사법정책연구원 설치 등으로 사법연수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제 사법연수원의 기능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교육 연수기관으로서 법원공무원교육원과의 통합을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사법연수원은 총무과와 연수과,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총무과와 교무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능에 있어서도 유사하고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화합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법원공무원의 자존감 고취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공간과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법연수원 연수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 기관의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는 통합조직의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정원을 150명으로 하는 경우 매년 71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 기관의 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인신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인신보호제도는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을 위한 구제신청제도로서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3억

원입니다.

13쪽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접수된 인신보호사건은 1269건으로 이 중 107건이 인용되었고 연평균 인용 건수는 약 23.7건, 인용률은 약 8.4%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먼저 인신보호사건의 인용률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 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인용률이 낮다면 인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인신보호사건 중 90%가량이 피수용자 본인이 신청한 사건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할 구역 내의 피수용자에게 실제 인용 사례를 알리는 것이 상당히 유효한 홍보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대법원은 구체적인 구체청구 사례 및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선변호제도의 일원화 및 관리 감독의 강화입니다.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 신규 선발 시 재판연구원 출신이 26명으로서 전체 선발 인원 중 42%에 달하고 이 중 24명이 자신이 소속해 있던 고등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로 선발됨에 따라 법원이 재판연구원 출신에게 국선전담변호사로 선발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국선변호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1.6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사건당 30만~4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것과 달리 국선전담변호사는 매월 평균 20건 내외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800만 원의 보수뿐만 아니라 사무실 및 50만 원의 사무실 운영비를 제공받고 있는바 이는 일반국선변호인을 차별하여 소수의 국선전담변호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차별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대법원 예규에만 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에게만 50만 원의 사무실 운영비 및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 역시 이를 정당화할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일반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국선변호 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수는 2010년 2269명에

서 2014년 4244명으로 4년 사이에 87%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선전담변호사 경쟁률도 2007년 1.8 대 1에서 2014년 8.1 대 1로 대폭 증가하여 국선전담변호사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일반국선변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대법원은 거꾸로 국선전담변호사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국선변호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수의 변호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일반국선변호인제도와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이원적 구조를 유지하기보다는 일반국선변호인제도로 일원화하되 국선변호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34쪽입니다.

국선변호제도를 일본처럼 일반국선변호인제도로 일원화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포함된 자라면 누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국선변호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제도와 달리 특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현재 국선전담변호사에게는 800만 원의 보수와 별도로 사무실과 50만 원의 사무실 운영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국선변호인제도로 일원화하면 이 같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기 때문에 선발 과정의 불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나 일반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후보자를 명부로 관리할 뿐이므로 선발 불공정의 우려도 해소됩니다.

넷째,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재위촉을 받기 위해 재판부의 평가를 의식하다 보면 결국 법원에 예속될 우려가 있으나 일반국선변호인은 재위촉을 위해 법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법원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국선변호인제도로 일원화하더라도 개별 사건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임은 여전히 법원이 담당하므로 국선변호인의 사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의 관리 감독을 위한 독립적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사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감독 및 평가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형사 사건의 법률구조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단일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의 사법지원센터를 참고하여 소송구조와 국선변호인의 관리 감독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운영을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설하는 기관은 법무부가 아닌 법원과 법무부, 변호사협회, 학계 등의 구성원이 모두 위원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전례에 따라서 7분으로 정하고, 주질의, 보충질의 등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박민식 위원님!

○박민식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제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잘 못 봤는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거의 90%를 해 주셔서……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안 심사인데 국선변호제도가 왜 나왔습니까? 한번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재룡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박민식 위원 아니, 그거는 알지요. 그거는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법원 예산에 국선변호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정재룡 ……

○박민식 위원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재룡 지금 이 책자……

○박민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재룡 예.

○박민식 위원 제가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차장님!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박민식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국선변호제도, 저도 평소에 이런 심각한 문제의식은 안 가졌는데 어떤 사건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번

의 도둑 뇌사 판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국선변호제도가 개선할 여지가 참 많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몸으로.

자, 한번 보십시오. 이번 도둑 뇌사 판결 사건을 자꾸 스테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때 1심 원주 재판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또 검찰에서 기소를 했지요. 경찰, 검찰 또 재판부에서 재판을 했지요. 그다음에 보니까 국선변호사가 있었습시다.

그런데 보니까, 물론 항소심에, 지금 재판 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시다만 1심 진행 경과를 보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떤 분들은 분노를 표시하는 분들도 수십만 명이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뭐냐 하면, 지금 국선변호제도를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아마 재판을 맨 처음에 1회 기일, 2회 기일, 한 3회 정도 하고 선고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선변호사님이 열심히 하기는 했습시다마는 그렇게 가열차게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피고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경찰도 검찰도 재판부도, 본인은 본인 스스로를 도울 능력이 제가 볼 때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국선변호인이 그 피고인을 대신해서 활약을 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시다마는 서면으로 몇 번 쓰고 제출하고 그냥 끝낸 거예요.

제가 직접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받기 싫다’,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접촉을 해서 경위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물어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시다마는 이런 시끄러운 사건에 그 시골에서 잘못하면 법원에 찍힌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친한 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법원에서 무슨 큰 권한이라고 국선변호사를 좌지우지하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국선변호인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처장님한테는 안 할 생각인데, 어제 법무부장관한테 하도 제가 핏대를 올렸습시다마는 차분하게 두 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도둑 뇌사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흥기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흥기라고 하면, 우리 처장님 대법관님이시니까 흥기라고 하면 가중처벌하는 구성요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박민식 위원** 구성요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성요건 사실이면 그게 흥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법정형이든 선고형이든 달라질 것이고, 그것이 칼이다처럼, 총이다 이런 그 형상 자체로 흥기는 당연하겠습시다마는 그때 처장님이 직접 들어보신 것처럼 이것을 흥기라고 인정하려면, 빨래 건조대를 흥기라고 인정하려면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 뭔가 상황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흥기라고 인정할 만한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판결문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 사람이 뇌 손상을 입었으면 머리의 뿔 다쳤어야 되는데, 빨래 건조대로 머리를 때렸어야 되는데 판결문 자체에 의하더라도 빨래 건조대로 등을 때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구성요건 사실을 경찰이 또 검사가 또 법관이 필요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이 사람 좀 엄하게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흥기로 인정할 수 있고 좀 봐줘야 되겠다 하면 흥기로 안 인정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엄격한 증명의 대상입니다.

○**박민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고백하건대 과거에 수사기관이나, 아마 법원에서 그런 관행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법관님들 아시지요? 이 사람 꼭 봐줘야 되는데 이대로 하면 너무 형식적으로 결과가 나올 성싶으면 3조를 뺀다, 흥기를 뺀다, 넣는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관행이 아직도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박민식 위원** 지금은 없겠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워낙 법정형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경계선상의 사건에서는 항상 다투어지는 아주 핵심적인 측면입니다.

○**박민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머리를 때린 것도 아

니고 그것이 칼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왜 빨래 건조대를 흉기로 인정했는지, 그렇다면 인정을 했으면 어떤 경위로 인정했는지 엄격한 증명, 증거의 요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판결문을 몇 번 봐도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지난번 법사위 이후에 제가 1심 판사한테 판결에 안 나타나는 기록상 사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쟁점이 일선에서 두 가지였는데 박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 하는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빨래 건조대라는 것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느냐 이 문제인데 빨래 건조대는 지난번 여기 회의장에 가져오셨던 것보다는 아마 더 큰……

○**박민식 위원** 똑같은 거라던데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지……

○**박민식 위원** 똑같은 거랍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현지의 수사검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박민식 위원** 지금 집에도 똑같은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금속 재질로 된 보통 집에 있는 큰 그런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당방위가 되느냐 과잉방위이나 하는 문제가 또 쟁점이 됐는데 이것은 기록을 본 사람들은 현장 출동 사진이 생생하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방바닥에 선혈이 낭자하여서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광대뼈가 함몰이 될 정도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일이 판결에 실시는 안 되어 있는데 초기단계에서 집주인, 이제는 피고인이 되어 있는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때의 상황이 상세히 조사가 되어 있는데 도둑이 저항의지가 거의 없는 상태인 상황에서 조금 꿈틀거렸는데 구타를 했다 하는 그런 정황들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박민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반드시 정당방위다 뭐다 하는 것……

어차피 판사님이 잘 하실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습니다.

○**박민식 위원** 그렇지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사실 인정의 과정이 최소한 판결문상이나 수사 공소장을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것이라는 거지

요.

형사 절차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유재량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그 정도 중요한 물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압수를 해서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를, 압수물의 현존 이렇게 되어야 증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기록상 사진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서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박민식 위원** 그래서 결론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유죄다 무죄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자기를 변호할, 자기를 법으로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데 이것이 민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법원의 책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건에서는 제가 볼 때 법원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자기 혼자 뭐를 하기가 힘들다 싶으면 직권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1심에서 처음에 아마 기록을, 변호인은 거기는 국선 전담이 없습니다. 원주는 그냥 일반 국선변호인인데, 보고 정당방위 주장을 안 하고 과잉방위만 주장을 했습니다. 기록상 보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꺼림칙했던 모양인 것 같고.

그래서 재판부가 오히려 ‘정당방위 주장을 해라’라고 해 놓고 다시 기록을 죽 보니까 ‘이것은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되어서 배척이 된 것 같고, 당해 재판부가 소홀하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기록을 들고 동료 판사들 여러 명한테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건인데 어떠냐라고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고 그것을 지금 항소심 재판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심층적인 심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민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민사재판처럼 주장책임이라고 합니까? 주장하지 않는다, 주장할 능력이 안 된다손치더라도 법관이 이것은 실체적 진실이 도 대체 뭐냐, 적극적으로 그것을 밝히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결심하고 사건 하나 던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건 특히 20대 네티즌들이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책무감을 가지고……

판결이야 유죄든 무죄든 그것은 법원의 몫이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으니까 다만 절차는 충분히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사회 상황이 예전하고는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 관해서도 새로운 인식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박 위원님 문제 제기하신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음에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광주 북구를 임내현 위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긴급조치에 관련된 판결이 나왔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임내현 위원 아시는 대로 유신 시절 그 당시 정권에 저항해서 많은 사람이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 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복역한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작년 2013년 4월 18일인가요 유신헌법 자체도 요건이 위배가 되어서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과거 면소판결이 났더라도 원래대로 하면 무죄판결이 나니까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전원합의체 판결 있었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손해배상에서 앞에다가 잔뜩, 그 당시에 한 절차에 관여한 것을 당연히 불법이라 할 수는 없고 수사 절차상의 어떤 위법행위, 고문 등의 그것이 없으면 국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증거가 안 될 경우하고 그

냥 그 자체로서 죄가 안 되어서 한 것을 구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 이게 후퇴된 판결이다, 오히려 유신헌법의 명분을 살려주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결국은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형식이다.

일제 시대 독립운동을 탄압한 경찰이나 나치 유대인 학살 지시에 순응한 군인들이 실정법과 명령에 따랐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민 위원장, 홍일표 간사와 사회교대)

내가 지금 이 손해배상하고 무죄로 인해서 알게 된 그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은 덜 났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2013년 4월 18일 그 판결을 교묘하게 뒤집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가서……

결국은 과거 전 대법원장 체제에 비해서 현대 법원장 체제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하면서 과거로 회귀된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우선 긴급조치가 위헌이어서 무효라고 한 판결은 제 기억에 1건은 전 대법원장님 때 나오고 또 1건은 현대법원장님 때 나와서 시기적으로 다 예전에 나온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긴급조치가 위헌 무효라는 것하고 이번 손해배상 기각한 것하고는 장면을 전혀 달리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손해배상사건은 그때 적용한 법률이 위헌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헌 무효인 법률을 적용해서 형사처벌을 했는데 그 뒤에 그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고 당연히 그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마치 예를 들면 예전에……

○임내현 위원 그러면 형사 보상은 되는데 일반 불법행위는 아니다 그런 취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습니다. 예전 민청련사건이나 이런 학생사건에서는 그것이……

○임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부분도 물론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랬겠지만, 상당히 뒤로 후퇴한다는 느낌이 간다는 일반 인권단체나 사회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 유념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 점을 우선 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긴급조치라는 국면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취지는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이 가지고 있던 법리를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위헌인 판결을 적용해서……

○**임내현 위원** 하여튼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알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다음 아까 전문위원이 적절히 지적을 했는데 사법연수원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하고 통합 문제 말이지요. 이게 원래 정원이 2000명 됐는데 사법시험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갈수록 줄어들었지요. 그러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본 위원이 의미 있게 묻는 것은 제가 마지막 퇴임 직전에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었지요. 거기에서는 오래전부터 검사에 대한 교육하고 검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전 법무부공무원 함께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했듯이 법관이라고 그래서 분리해서 하는 것도 약간 그런데다가 지금 사법연수원 숫자가 확 줄으니까 그쪽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연수원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는 수십 년 해 보니까 같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서로 일체감도 갖고 또 예산 절감도 필요하다 해서 적극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를 합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 해 보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산 심의단계에서 이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저희는 좀 의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이 제기한 논의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내현 위원** 하여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알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법연수원이 일산으로 갈 때 연수생이 300명에서 1000명이 될 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법관의 숫자가 1200명에서 3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반 사정이 전혀 달라졌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다음에 천생 서면질의를 해야겠는데요.

연수사업비가 사법연수생은 130만 원인 데 비해서 신규임용법관은 540만 원,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크다.

국선번호인 보수가 일반회계하고 공탁지원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것을 요망하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국선전담번호사에 대해서 예비판사의, 로클릭의 경력 쌓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도 서면질의 할 테니까 잘 한번 검토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알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일표** 임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 포항 출신 이병석 위원입니다.

행정처장님, 대법원 등기신청서류 전자보관 및 열람발급시스템 구축 필요하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습니다.

○**이병석 위원** 이것은 시급을 요하고 어차피 이 트렌드를 벗어날 방법도 없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그렇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등기원인증서 보관 현황이 영국·미국·프랑스, 여기는 영구 보관이지요, 99년 보관.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이 보관 형식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실제 재판하다 보면 등기원인증서를 봐야 되는데 이게 보존기관이 지나서 멸실이 되고 없어서 권리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병석 위원** 등기특별회계법에 따라서 등기특별회계가 2017년도 회계까지만 존속되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이병석 위원** 이 존속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4단계에 걸친 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3단계에 해당하는 등기소 고도화사업의 전산화를 위한 부분 관련된 예산 33억 원은 이 적기를 놓치면, 2017년 바로 등기특별회계가 소멸되는 연도와 맞물리게 되면 대단히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아주 적절한 설득을 통해서 국회 차원의 예산이 반드시 증액 또는 신설되어서 이 부분의 예산이 확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그다음 국민참여재판 홍보예산에 올해 얼마를 책정했지요, 내년 예산을?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액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2015년 4억 4200만 원 되어 있는데 2013년에 5억 4100만 원, 작년엔 6억 100만 원, 그런데 내년에 가 가지고는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취임한 이후에 모든 관점이 재판관의 관점에서 재판하지 말고 국민의 관점에서 재판하라고 일종의 범구경을 하나,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애를 쓰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은 바로 재판현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대법원의 하나의 기조와 원칙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배심원들의 출석률도 높아지고 그 인식에 따라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활성화도 뒷받침될 텐데, 이것은 본래 대법원이 요청한 대로 다시 국회에서 증액되어서, 혹시 불용처리 될까 싶어서 아마 미리 정부가 염두에 뒀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돈 쓰세요. 전반기에 써요, 전반기.

지금 보니까 후반기에 KBS, MBC, SBS, 공중파 TV에 송출비 2억 원을 지급하게 된다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불용처리 예산으로 이상하게 오해가 되어서, 최소한 작년도 6억에 맞춰야 될 부분이 2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들어올 정도면 이것은 운용의 잘못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거 국회에서 증액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독도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저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이병석 위원** 큰일 났어요. 사법부에 계신 분들이 독도에 한 번도,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다녀왔다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그거 이상한데, 내가 오늘 독도에 관한 영상을 하나 상영할 텐데 한번 보십시오.

가격은 무료입니다.

독도 접안시설 한번 보세요.

(동영상 상영)

무료로 한 편 더 보여 드립니다.

(동영상 상영)

제가 국토해양위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또 2010년 국정감사에서 이 두 영상을 보여 주면서 독도 관리의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국정감사에서 제 주어진 발언 시간에 이 영상을 보여 줬어요.

그 이후에 폭탄 한 열몇 개 정도가 났을 텐데 그것을 특수부대가 와서 결국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간도 조금 바꿨습니다.

(홍일표 간사, 이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때까지는 저 모양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의 안전조차도 담보되지 않을 정도의 허술한 관리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독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2005년도 개방 당시에 10만 명이예요. 지금은 한 30만 명 됩니다.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2008년부터 여러 해 주장한 것이 독도입도관리센터를 만들어서 관리원 한 사람이라도 저기에 남겨 둬야 된다 그리고 독도에 국민 생명 안전을, 우리 자국민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지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종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도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했는데 문화재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서 불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정감사를 할 때 저 영상과 함께, 다시 1년이 조금 못 되어서 문화재위원회가 드디어 전체 현상의 조화를 이루는 전제로 조건을 붙여서 독도입도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허가를 했어요.

그 허가에 따라서 이번에 엇그제 보도된 것처럼 독도입도센터 건립예산 78억 원 가운데에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내년 예산 30억 원을 계상했는데 갑자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입찰공고를 내고 진행하다가 엇그제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해명도 없이 그 입찰공고를 취소했어요.

취소한 것도 정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납득이나 무슨 공고를, 사전에 무슨 통지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리고 여기까지 예산 배정이 되는 모든 과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독도영토관리단에서 전 부처를 총괄하는 예산 조정을 거쳐서 나왔는데, 이것을 정부가 어느 날……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우리나라 영토에 우리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여행을 하고 거기에 가서 우리 영토, 땅을 밟고 발을 밟고, 애국심을 스스로 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위험한 곳에 가서 하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우리 땅 우리 영토에 짓는 것을 정부가 못 하겠다고 저렇게 양탈 부리듯이 어느 날 갑자기 취소했는데, 이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행복 추구권과 여행자유권을, 거주 이전의 자유권까지 포함한 기본권을 정부가 부작위에 의해서 침해하고 있는 현존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글썄, 국민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에 국민들의 안전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고를 취소한 배경이나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적절한 시기와 방식으로 추진을 하지 않을까 막연한 그런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관련해서 만들어 낸 결정을 보면……

인원도 별로 없는데 내 마이크……

○**위원장 이상민** 3분만 쓰시지요.

○**이병석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

중진의원인 내가 이런 것까지 끝까지 질의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정부가 협력하고 보호해야 할 헌법적 요청에 대해서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그것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위안부의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결과적으로는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 영토에, 세금을 내는 국민이—외국인도 포함이 되어서—거기 가는데 독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머무르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독도입도관리센터를 만들어서…… 그것도 문화재위원회가 반대하던, 부결한 것을, 두 번 부결하고 그리고 문화재위원회가 그것을 조건부로 해 가지고 인가한, 허가한 그것을 정부가 예산까지 배정해 가지고 하다가 입찰공고까지 낸 것을 어느 날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부작위에 의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권과 그리고 여행자유권, 거주자유권 그리고 생명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 주권이 확실하게 행사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어떤 형식으로 시설을 하고 할 것인지는 행정부의 해당 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석 위원** 제가 헌법소원을 제출하면 정말 진지하게 심의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것은 헌법재판소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감사합니다.

다음에 서기호 위원님!

○**서기호 위원** 서기호 위원입니다.

도둑 뇌사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판결문을 봤는데, 판결문상으로 보면 방위 상황은 넘어서서 지나갔고 또 도둑이 도망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정당방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당방위는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형법 21조2항·3항에 나와 있는 과잉방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척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판결문에 보면 정당방위에 대한 배척사유와 과잉방위에 대한 배척사유를 분리해서 실시하지 않고 한꺼번에 합쳐 가지고 기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잉방위에 대한 판단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판결에 대해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막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저

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이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다, 정당방위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70%가 넘더라고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정당방위에 관해서 국민들의 정서, 인식과 법관·법조인들의 인식이 굉장히 차이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대한 기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저는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방위자가 맞닥뜨린 그 상황이 야간이고 주거, 안에서 벌어진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주간에 바깥에서 이런 침해를 받았다고 하면 주위에 도움을 구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당방위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밤에 자기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굉장히 깜짝 놀랄 것이고 그다음에 분노를 일으킬 것이고 그 사람이 단순한 주거침입범인지 아니면 절도범인지 아니면 성폭행을 하려고 온 것인지, 강도를 하려고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예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 사건에서도 어머니와 누나가 자고 있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성폭행하려고 온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주거 안에서 벌어지는 정당방위 상황은 더 요건을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국민들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관이나 법조인의 머릿속에서는 어느 정도까지가 방위상황을 초과한 것인지, 넘어선 것인지, 어느 정도로 상당한 방법으로 방위를 해야 되는 건지가 이론적으로는 구별이 되지요. 하지만 이 방위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보면 그 야간에 특히 주거상황, 주거에 침입한 그 범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머릿속으로 과연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심리상태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흥분되고 분노에 찬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충분히 제압이 되는 것인지 확실치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방이 저항능력을 상실했어도, 객관적으로 했어도 주관적으로 볼 때는 아직 제압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더 계속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고려를 해서 정당방위, 과잉방위 요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굉장히 관대한 판결이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조두순 사건이 터지면서 특히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형량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그다음에 법관들의 성비도 변화가 되면서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성폭력 사건이 이제 친고죄가 폐지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판결 자체 가지고 논란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형사재판장회의 등을 소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근본적인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고, 판결문을 작성할 때도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는 것, 특히 과잉방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양형위원회에서도 이런 상황, 정당방위와 과잉방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의 범행에 대해서 양형에서도 참작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양형위원회에서 어떤 양형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양형위원회상임위원 이진만** 예.

○**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양형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양형도 별도로 기준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십 년 전보다는 사회상황이나 법 감정 같은 것이 많이 변화가 돼서 정당방위의 인정범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좀 필요하고 법리적인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판에 걸려 있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은 그 기록을 본 사람만이 가장 잘 아는 것인데 추상적으로

밤중에 아파트에 침입한 도둑을 잡다가 뇌사 상태,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렸다고 하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과 그 일련의, 식물인간 상태에 가기까지의 여러 과정들의 기록을 다 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사실을 전제로 해서 판결의 당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법관회의나 이런 데서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논의의 장을 펼쳐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서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 사건기록과 재판과정을 다 들어봐야 사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가지고 어떤 것이 옳으나 판단하기는 어렵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그다음에 특히 과잉방위에 대한 인정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것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식적인 것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어떤 변호사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정당방위 주장을 하면 ‘그거 이야기해 봐야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딱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라는 것은 이 사건 말고도 기존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의해서 다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 사건 말고도 여러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국민정서와 차이가 나는 그 이유를 아까 제가 두 가지 정도 들었거든요. 야간에 주거침입한 상태, 이 상황에서는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 경우에는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 요건을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구별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관의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구별, 방위상황과 상당한 방위방법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 이것 말고 그렇게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심리상태, 그 방위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판단, 심리학적 접근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이 재정립되는 노력이 보이지 않을 때는 국민정서와 법관의 인식 사이의 괴리는 굉장히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왕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

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또 하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사관행도 그렇고 법관의 의식 판단도 그런데 과정보다는 결과를 너무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정서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유발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더 중하다고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범죄 유발한 사람에 대해 공격을 한 사람이 더 크게 처벌받느냐……

그다음에 이 사건 같은 경우처럼 아예 결과가 뇌사 상태 이렇게 중하다 보니까 거꾸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돼 버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 버리는 이런 결과 자체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런 국민정서에 대해서 국민들이 법을 잘 몰라서 그런다, 사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취급할 게 아니라 국민정서가 이렇다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국민정서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사법판단이 될 수 있으려면 좀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상민** 다음에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경북 문경·예천 출신 이한성 위원입니다.

우리 박병대 처장님을 비롯한 대법원 간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예산이 376조나 되지만 다 이렇게 5000만 명이 쪼개 쓰다 보면 대법원에도 뭉이 많지 않다,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굴뚝같으나 여의치 못한 점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늘 우리 국민의 권리·권익 증진과 피해자 보호 또 국가 법질서 유지에 늘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결산보고 때 한 번 이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국고 귀속되는 공탁금이 최근에 부쩍 늘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이한성 위원** 작년에는 한 570억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는 한 319억 정도 있다가 최근 2010년도에는 한 290억 또 2011년도에는 288억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2011년에 비해서 2014년에는 무려 한, 배가 늘었어요. 그 원

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대개 갑작스럽게 느끼는 것은 어느 몇 개의 소수 사건의 액수가 많은 공탁금이 한꺼번에 국고에 귀속되면서 증가율이 확 뛰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압니다.

○**이한성 위원** 그런데 그런 수도 있습니다, 사실. 거액 추징금이 몇 조짜리 추징금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집행률이 안 올라가고 하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또 송달률이 50%에 머물고 있어요. 물론 2013년도에는 60.7%로 오르긴 했습니다마는 송달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주소를 억지로 알려고 해 가지고 알아낸 것이 좀 틀린 것을 알아냈다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달률도 떨어지고 이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국고귀속률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이한성 위원** 그다음에 공탁금의 평균 재고율이라 할까 그게 한 6조 7000억쯤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이한성 위원** 평균 한 6조 7000억 이렇게 돼 가고 있지요? 항상 그 정도.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6조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한성 위원** 6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습니다. 6조 7000억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한성 위원** 6조 정도, 6조 7000억 정도 되는데 한 80%, 79.4% 정도는 신한은행이 맡고 있고 SC하고 우리은행하고 죽 나눠 가지는데…… 이게 이제 이자율 계산이 좀 애매하다 그래서 물론 시중 이자율보다는 짝 것을 공익 목적으로 출연 받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적정한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지난번에 한 번 지적받은 적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이자율 문제는 금융당국하고도 끊임없이 해마다 논의를 해서 적정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체 일반 금융이자율이 저하되고 있어서 더 높아자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한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의 재판연구원에서 다시 또

국선전담변호사 이렇게 가는 것이 나중에 또 법관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냐, 신문에서 보면 많이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오늘 또 전문위원이 거론을 하는 것을 보면 좀 더 어떻게 신빙성이 더해진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사회에서 또는 변호사들 일각에서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판연구원 선발과정이나 또는 법관 선발과정에서 여러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위원** 하여튼 로스쿨 되면서 성적도 막 알아볼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냥 자기 부모 백으로 임관되고 로펌 가고 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참 능력껏 선발된다는 그런 희망과 신뢰를 잘 좀 부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특히 법관 임용의 경우에는 그 심사과정에서 아주 최초 첫 단계만 제외하고는 그다음부터는 전부 인적사항을 없앤 소위 블라인드 테스트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슨 그런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는 차단이 돼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처장께서는 단호히 동의하지 못한다 그런 것이 이제 사법연수원하고 법원공무원연수원하고 두 시설을 통합하는 데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못한다는데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법관 숫자가 처음 연수원 일산으로 갈 때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이미 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때에 비해서는 법관들에 대한 연수의 횟수가 획기적으로 증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 연수의 수요 자체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외국 법관들 연수가 같은 기간에 2팀, 3팀이 중복돼서 있을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생긴 제도로 사법보좌관이라든지 또 재판연구원 연수라든지 또는 지금 사법연수생이 줄어들면서 생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교수들도 거기서 양성을 해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방학되면 들어와서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한성 위원** 시설 이용률이 옛날 1000명 사법연수생 시절하고 비슷하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시설은 지금 사법정책연구원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한성 위원** 그래서 그런 말 안 듣도록 시설 잘 활용한다면 다른 말이 들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산적인 측면에서 허실이 없도록 충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힐링캠프사업이 여성가족부 시설을 같이 씁니까? 여성가족부에 또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유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거하고 법원에도 이혼하면서 파괴된 부모나 자녀들 그런 사람들을 심리치료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따로 할 필요 있느냐, 가급적이면 그것도 국가, 이런 것은 사법부도 역시 정부기관과 서로 협력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뭐 재판이야 따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 협력을 더 하는 것이, 이것은 어떻게 통합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이혼가정 문제를 여성가족부하고 여러 측면에서 협력을 해 나갑니다마는 힐링캠프 문제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은 이혼이 된 한부모 가족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당사자들을 상대로 가능하면 이혼을 좀 억제해 보도록 한다든지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자녀들을 케어해야 될지를 알리고 하는 그런 것이어서 약간 국면은 달라집니다마는 중복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은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하여튼 재판 이외에 너무 활동이 넓어지는 것도 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부의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면서 그런 선에서 또 판단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법원 청소용역회사에 수고하시는 분들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이한성 위원** 이분들 보고서라 할까, 노임이라 할까 이것이 최저생계비 133만 원에도 못 미친다, 검찰청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다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만날 이렇게 지적이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저희가 예산당국에 예산 요구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일용노임단가로 편성 요구를 했는데 결국 정부의 전 부처 일괄 예산편성지침이 최저생계비인가요, 그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이상 도리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된 용역위탁계약을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수탁회사들이 자기들이 자금 운용을 하면서 낮게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수수료를 많이 먹는다 그것은 좀 주의를 하고, 사실 용역회사는 사람들 쓰고 앉아서 돈 버는 수가 많아요. 큰 대규모 용역회사가 많습니다. 거기서 중간에서 자기들이 일자리 소개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자기네 몫을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해 주고, 그래서 감독 좀 하시고 적용도 좀 하시고 실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잘 알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홍일표 위원님!

○**홍일표 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입양아동 살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울산에서 입양된 지 25개월 된 여아가 어머니의 무차별 폭행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쇠파이프로 수십 차례 때리고 매운 고추를 물에 타서 억지로 먹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2년 8월에 입양특례법을 개정했지요, 아동 권리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인 대구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였을 텐데 그런 허가 과정에서 제대로 됐는지 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보도를 보면 양모는 두 친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 어린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사는 거주 상황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데 또 그 월세를 10개월이나 밀리고 있었고 이랬었는데 전세 3500만 원이다 또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이런 것을 위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문서까지 위조해 가면서 계획적으로 입양을 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국내 입양 촉진을 위해서 입양수수료 한 270만 원 정도를 면제하고 있고 또 지금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여러 보육료 같은 게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월 15만 원 양육수당 이런 것도 입양과 관련해서 특별히 지급하고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바라보고 또는 이런 것을 악용하면서 입양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입양 허가하는 법원이 앞으로 양부모가 과연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를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양 동기, 양육계획,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 부양 능력, 거주 형편 등 양육환경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고,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양 허가를 하기 전에 이런 양육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이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사건에는 우리 법원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참 애석한 사건이 생겼고 법원도 전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입양특례법의 구조가 법원에 입양 신청을 하기 전에 입양기관이나 아니면 아동상담소 이런 데서 입양하려는 양친부모가 적격자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적격이라는 판정이 나와 그 적격조사서를 붙여서 법원에 비로소 입양 허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녀 숫자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적격이다라는 가정조사서를 붙여서 신청이 됐는데 그 이후에라도 법원이 좀 더 치밀한 심리를 했으면 밝혀질 수도 있었겠습니까마는, 입양 신청이 된 것이 입양 허가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또 한편에서는 사회에서 좀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양을 못 하고 입양아가

대기상태에 오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심리를 촉진해 달라고 하는데, 법원에 온 뒤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에서 만들어 온 가정조사서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일일이 다 확인하게 하면 절차가 지연되는 그런 상충되는 애로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가정조사서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심리도 좀 더 심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조사 과정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좀 엄격하게 하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을 또 엄벌하고 이렇게 해서 법원의 판단 자료가 정확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여간 입양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로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수출국이다 이런 오명까지 한때 썼는데 입양을 촉진하고 확산시키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또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까지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도 앞으로 더욱 심사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문심리위원 활용 제도가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홍일표 위원** 판사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한 영역에서 심리위원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의료소송 전문심리위원의 경우에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심리위원을 한 사람씩 쓰고 있나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대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대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홍일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신해철 씨 사망 사건 때문에 천공이 발생했다, 어디에 또 뭐가 있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의료계에서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 또 실제로도 의료사고의 경우에 의사라고 해도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1심에서 전문심리위원 썼는데 그 사람의 의견과 2심에서 또 다른 심리위원 쓰다 보니까 그 사람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서너 명의 의사들을 모아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하고, 거기서 토론하는 것을 판사가 직접

지켜보고 그렇게 의사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을 죽 지켜보고 나서 판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심리위원 활용 방법을 좀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번 신해철 씨 사망을 바라보면서,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좋은 착안점을 제공해주셔서 그것을 포함해서 전문심리위원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다음에 국선전담변호사와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012년 3월에 도입한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성폭력만 전담하는 국선변호사, 아동 학대만 전담하는 국선변호사 이런 식으로 국선전담변호사를 국선만 전담하는 변호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수 분야를 전담하는 변호사제도로 이렇게 제도 설계를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미 하고 있나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현재는 국선변호사를 전문화하거나 이렇게 시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않고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홍일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국선전담변호사를 하면서 전문 분야를 정해서 그 부분만 전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다음에 사건 열람하도록 하는 사건기록 공개와 관련해서 지금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본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건기록 부분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홍일표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절차적으로 제도화해서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나요, 현재?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신청제도는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신청제도?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홍일표 위원** 그래서 이게 사생활이나 영업비

밀 이런 것들은 소송기록에 나와 있다 해도 제삼자가 무조건 그 기록 좀 보자 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비공개가 유지되면서도 사건 열람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절차를 구체화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이 건수가—한 10여 년 전부터 시행됩니다마는—초기에는 10건 미만이었다가 최근에 연간 전국적으로 다 합치면 30건에서 50건 이 정도 규모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사건이 접수 건수가 늘었다고 하면 이 관리시스템을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게 최근에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있다던데요? 기록을 뭐……

그게 있나요, 수석전문위원님? 기록 열람하는 것과 관련해서, 박영선 위원장 있을 때?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지난 법사위에 있을 때……

○**홍일표 위원** 판결 공개……

○**위원장 이상민** 판결 공개……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형사판결 공개제도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형사판결 공개제도요?

그것도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민사보다는 좀 좁게, 프라이버시 문제가 훨씬 강하게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좁게 인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것도 신청 건수가 많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것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왜? 목적이 뭐니까, 대체로?

남의 사건에, 자기 사건 말고.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원래 제 기억에는 그전에는 학술 목적이거나 공공성이 있는 목적에만 공개하게 되어 있던 것을 재판의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전면적인 공개를 하는 것으로 법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그게 지금 시행한 지 얼마 됐나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형사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민사는 내년부터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형사는 2013년부터고 민사는 내년부터고?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것 한번 면밀히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법제와 미국의 법제, 미국에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볼 수 있고 공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은, 본인들은 원하지 않는 분도 많지 않겠어요? 저도 그 법사위에서 통과됐을 때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통과……

한번 그것에 대한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해 보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위원님들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서기호 위원님, 5분……

○**서기호 위원** 예산 관련해서 증인지원실 설치 예산이 작년에 편성된 것이 23.3%만 집행됐고 그런 점들 비춰 봤을 때 2015년 예산에 대해서는 과다편성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작년까지 편성된 것은 특별증인지원실이라 그래서 성폭력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냥 일반 형사사건, 일반 민사사건에 오는 증인들을 위한 증인지원실 설치 경비가 새로 편성이 돼서 그것은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015년에는 16개 지방법원에 증인지원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히려 내년의 이 예산으로는 다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2016년 예산까지 넘어가야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기호 위원** 기존에 예산집행률이 23%에 불과하게 된 이유가 신축공사비를 확보하고도 신축공사를 하지 않고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집행률이 낮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신축보다는 구조변경 리모델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과다하다고 저희가 주장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10억 정도 감액할 계획이라고 저희한테 가져왔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특별증인지원실을 원래 금년 예산편성할 때는 따로 짓는 신축비용을 기

준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보니까 따로 신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존 청사시설을 일부 떼어 내서 리모델링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증인지원실은 자체 내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냥 예산이 유지되어야……

○**서기호 위원** 여기 10억 감액 이것은 누가 해오신 건가요, 그러면?

실무진에서는 10억 정도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요. 처장님께 아직 보고 안 됐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저는 그렇게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아마 증인지원실 설치를 하다 보면 일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대 절감을 하면 그 정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실무진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예산이 조금 남는다면 그것은 저희로서는 다른 법원에 확산 설치를 할 일이지……

○**서기호 위원** 증인지원실과 연계된 문제인데요. 청소용역에 대한 예산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청소용역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시중노임단가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에서 60% 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법원행정처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내세운 지침에 따라서 신청했는데 깎을 때는 결국은 다른 예산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깎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중노임단가로 청소용역 노동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재부 예규에도 맞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불필요한 예산들, 즉 아까 말한 증인지원실 같은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하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시중노임단가로 해야 기재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안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그런 예산편성에서의 차이점들을 고려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시중노임단가로 계산하면 3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편성은 안 됐지만 지금 법사위에서 의결해 가지고 현재도 1억 정도 추가하는 것으로 이

렇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미 감사원에서도 시중노임단가를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잘해 놔어요, 문제점들을. 그리고 이 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것이지요. 2004년도에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채택할 때는 그때는 국선변호를 변호사들이 좀 기피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경쟁률도 1.9 대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1 대 1로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제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굳이 소수 변호사에게 특혜까지 부여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법원에 선발권이 부여가 되고 특정 재판부에 전담을 시키다 보니까 재판부의 눈치를 보게 된다. 그래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 변호인의 독립성에 침해가 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제3의 기관에 해야 되는지 마는지 이 부분은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기적인 과제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담변호사제도 당초 도입할 때와 달라진 상황에 따라서 특혜 시비를 없애는 것,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국선변호제도는 논의의 출발점이 어떻게 하면 변호가 충실하게 될 수 있느냐에 최종적인 판단기준을 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흔히 일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법조문화가 일본이나 이런 데는 일반 국선변호의 단가도 우리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일단 맡겨지면 굉장히 충실하게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 국선변호를 맡기면 와서 ‘반성합니까? 다시는 안 그러지요?’ 이 말 한마디만 하는 국선변호가 허다하게 있어서 그것을 깨기 위한 방편으로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만들

었고 한 10여 년의 운영 결과 굉장히 대체적으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학자들도 그렇고 또 국선번호 전담하고 있는 본인들도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난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하면서는 아주 한두 항목의 부정적인 것만 보도자료로 풀어서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법관들이나 또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나 또는 학자들의 견해나 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굉장히 성과가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혜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제도의 존재에 관해서 지금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서기호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2004년 이전 것과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이야기지요. 그때보다는 더 진일보한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국선전담변호사제도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처장님은 아무 문제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최근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감봉 4개월 받은 판사? 그것도 다 국선전담변호사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재판부에 예측돼 가지고 독립적으로 변론 못 한답니다. 재판부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것을 그런 문제들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글썽, 더 치밀하게 점검은 하겠습니다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결과 자체로도 재판부의 예측이나 이런 것의 부정적인 답을 한 숫자가 비율이 훨씬 작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더 점검을 해야 될 문제이고 합니까마는 또 그 재판부에서 평가하는 항목도 ‘얼마나 무죄 변론을 열심히 하느냐?’, ‘피고인과 얼마나 접견을 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재판부에 좀 귀찮게 하는 주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나 조금 더 점검하겠습니다.

○**서기호 위원**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굉장

히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치, 제3의 기관, 이런 문제도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어떻게 채택하든가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논의는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는 지금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기존보다는 낫다라는 전제에서 뭐 별문제 없다 자꾸 이렇게 방어적으로만 이야기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아까 변론의 독립성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선발 과정에서 법원이 주도적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특혜 시비가 있는 거잖아요. 로클릭 출신들이 대거 이번에 채용된 것도 그렇고.

이 점에 대해서 그 개선책이 나와야지 그 개선책 없으면 이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일부 개선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또 시행할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국선변호사 선발위원회의 면접위원 같은 것을 그 당해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다수가 들어와서 선발하게 한다든지 국선변호운영위원회의 구성도 외부 위원을 다수 참여시킨다든지 해서 법원이 무슨 자의적으로 할 여지를 상당 부분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서기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제가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규칙에 달랑 한 구절 있고 그다음 예규로 다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국회의 통제 밖에 벗어나 있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법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규로 알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문제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법으로 규율하는 상황까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민**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서기호 위원** 저는 문제의식을 좀 심각하게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알겠습니다.

○**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지금도 국선변호인이 ‘반성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딱 두마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도?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부실한 변론도 일반 국선변호인에게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적어도 국선전담변호사들의 경우에는 100% 접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선변호인들은 접견을 안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법원으로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지정하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일반 국선변호인은 국선변호인 풀에서 그 사건 사건마다 지정을 하고 그리고 국선전담변호사는 몇 개 재판부에 전속이 되어 있지요.

○**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그것을 잘 살피셔서 성실한 변호인을 지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서영교 위원님, 문자메시지를 지금 봤어요, 제가 이것을 하다가.

질의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오늘 긴급조치 9호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동안 상처 많이 입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큰 상처를 입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 부분의 질의도 많이 받으셨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아까 질의 좀 받았 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런 판결을 할 때는 서로 좀 논의하거나 상의하지 않으시나요?

대법관님들끼리 좀 상의도 하고 그러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국가가 일반인들을 향해서 나쁜 행위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1심·2심에서도 그나마 잘 해결했는데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는지, 꼭 돌아가서 전달해 주십시오. 대법원이 그나마 가장 소중한 중심 평형수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는 또 한 가지는 요즘,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우성 씨도 마찬가지로, 탈북했던 사람들이 합동심문센터에서 구금된 채로 간첩이라고 계속 요구를 받고 그리고 검찰이

간첩으로 기소를 했고, 자유를 찾아 왔을 텐데 뭔가 사람들이 좀 다르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이 과잉에 의한 것이라라고 해서 무죄를 내려 주는 법원, 그나마 법원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또 국민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지, 국가가 큰 권력으로 국민에게 상처 입힌 것을 다시 보듬어 주는 것이 법원인데 긴급조치 9호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문제를 지적하고, 또 한편으로는 간첩 그런 사람 제가 본 적도 없지만, 중심을 잡아 줘서 그나마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분들이 법원입니다, 법원. 정치권이 아무리 얘기해도 휘둘리지 마셔야 하고요. 그런데 야당 의원들은 누구 뭐 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친 사람 보듬어 주라고 하지. 그래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기소권이 검찰에게만 있는데,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서영교 위원** 기소권이 검찰에게만 있지요. 그 기소권이 남용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제어장치로 둔 것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인 것 같은데요. 재정신청 인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판례가 있거나 이런 것은 재정신청 받아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환기를 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치검찰, 정치검찰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보시다시피 치협 사무실을 다 뒤져서, 네트워크 병원 안 된다라고 한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입법로비라며 국회의원들을 연일 언론에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야당 중심으로요.

뭐 다 양보한다고 해서, 거기 이름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 거기 사인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연일 나와요. 그래서 검찰에다가 문제 지적을 하면 자기네는 그러지 않고 있다고 하고. 돈 액수까지 나오고, 후원금제도 그대로 뒀 놓고 후원금 받았다고 연일 떠들어대면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실 오늘 오전부터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세월호법을 통과시키고 여러 분을 봐야 되

는데 잠시 지역구를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왜냐 하면 세월호법 통과시킨 것도 보고도 좀 해야 되겠고, 이만하다 그리고 제가 또 열심히 달려 온 겁니다. 와서 꼭 전달을 하고 싶은 것은, 이만큼 국회의원들은 자꾸 알려야 합니다.

우리 19대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연금 안 받는 것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희가 법안까지 통과시켰어요. 19대 국회의원들만큼은 65세 이후에 연금 받지 말자. 통과시켜도 여러분도 모르고요, 국민도 몰라요. ‘저들은 자기네 연금 받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알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입법로비 했어요’라고 하면서 땅 터뜨리면 휘청휘청거리지요. 이럴 때 법원에 올라오게 되면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더 많이 보셔야 되고 더 정직하게 보셔야 되고 더 중립적으로 봐 주셔야 되고요. 꼭 한 번 더 환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사법의 본연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그러면서도 또한 재정신청이 들어올 때는 왜 재정신청을 하는지, 잘못되면 당연히 기각시켜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잘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저희 보좌진들이 정리한 것에 의하면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 잘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창이 있습니다, 거창. 거창에 이번에 법조타운이라고 하면서 법원을 세우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추진 중입니다.

○**서영교 위원** 예산이 법원에서 낸 건가요, 아니면……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법원, 검찰이 다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있고 우리 예산도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원이 굳이 그쪽으로 이동할 이유가 있나요, 시내에 법원이 있다고 하던데?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오래된 청사니까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부지를 물색한 데에, 제가 듣기는 구치소가 같이 가게 돼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2분 더 드리세요.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법원은 그 자리에, 아니면 거기서 재건축을 하든지, 시내 중심에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거창군 중심에 있는 법원이 더 좋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로요, 검찰청도.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전하면서 땅 새로 사서 지을 이유가 없지요. 이유는 구치소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그 구치소 가까이에 그러면서 법원도 만들고 그리고 검찰청도 만들고, 필요 없는 예산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고요.

구치소가…… 군수가 원해서 가지고 가는데 주민들이 많은 사람이, 4만 명이 서명했다고 서명용지를 갖고 왔는데 그 서명용지가 가짜라는 거지요. 그리고 교도소가, 구치소가 들어서는 주변 1km 반경 안에 초·중·고교가 11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야기되는 것에 의하면 그 구치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군수가 건설하는 사람과 가깝다, 그 유치위원장의 동생이 레미콘을 한다, 그 땅은 벌써 땅값이 올랐다, 주민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치소를 꼭 뒤편에 한다면 조금 떨어진 곳에 둬시다.’ 그게 맞지 않겠어요? 법원하고 검찰청은 군 한복판에 두고 구치소는 좀 떨어진 곳에 두고. 구치소가 옆에 없으면…… 남비현상이라고도 하지만 어차피 새로 지을 때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구치소의 입지 선정은 법무부의 소관사항입니다마는……

○서영교 위원 법무부도 두 번이나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군에서 요구해서 했는데 군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갈등이지요, 갈등. 그래서 법원은 특별히 그리로 이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꼭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의견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아마 현재 있는 구청사가 워낙 노후하고 좁아서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후보지로 나와 있는 입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현 청사는 35년이 지나서 거기서 고쳐서 다시 있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할 위치가 학교 주변이고 하다면, 특히 구치소가 같이 가서 그것이 부적절하다면 법무부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법원이 그쪽으로 오는 것을 굳이 반대는 안 할 거예요, 오히려 그쪽으로 개발돼서 좋으니까. 그런데 구치소를 하기 위해서 법원이 미끼처럼 된 것은 아닌가, 검찰청하고. 말이 법조타운이라고 하는데 구치소 그리고 구치소만이 아니라 재소자분들 재활하는 그 공간이 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공간이 있어요. 저희는 어차피 들어와서 20년을 같이하는데 얼마 전에는 거기서 나온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교회에 가 가지고 목사님 목에 칼을 찌른 거예요. 그것을 또 막다가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위험을 주민이 항상 안고 살아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왔다 그러면 감수를 할 텐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주변에 데리고 있으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가.

저희는 안고는 지금 살지만 새로 들어갈 때만큼은 좀 더 입지도 보고 좀 더 떨어진 곳으로 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법원도 이것이 바람직한지 안 한지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주민의 입장…… 법원만 간다면 제가 확 밀어드리겠습니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답변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거창지역 주민들이 제 방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교도소 문체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군수 집행부하고. 그런데 군수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 안 하고 일방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증폭된 것 같거든요. 처장께서도 법원 입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것은 관계기관하고도 의논 좀 해 주시고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과 관련하여 박지원·이춘석·김진태·전해철·노철래·임내현·김도읍·이한성·서영교·이상민·정갑윤·서기호·우윤근 위원께서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이 서면질의와 기타 서면답변 필요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께서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1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질의서와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모든 보좌진 여러분들, 속기사님들,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도읍	김진태	노철래	박민식
박지원	서기호	서영교	우윤근
이병석	이상민	이춘석	이한성
임내현	전해철	정갑윤	홍일표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김재원 이완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강남일
전문위원	심태규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양형위원회상임위원	이진만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현